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뉴스레터

KOSCA LETTER

2020 vol.26

열정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



일 년 중 마지막 절기인 겨울,

한 해를 마무리하는 끝자락이자
다가올 해를 맞이하는 새로운 시작이기도 합니다.

강한 바람에 코끝은 시려오지만
마음만은 따뜻한 이 계절이 되길 바랍니다.



2020년 Vol. 26

- 표지이야기 범어사
- 발행인 회장 김세원
- 기고/투고 kosca21@kosca.or.kr
- 편집/발행처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 디자인/제작 CCA (051. 647. 5991)
- 인쇄 성광정판 (051. 261. 0027)

PART 1

04 취임사 김세원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제12대 회장

PART 2

06 협회 소식
16 건설공사 수주지원 및 제도개선사업
21 특허 및 신기술 소개 - 2020년 3/4분기 신기술 현황

PART 3

24 전문건설인의 삶 건삼인 제49호 - (주)삼영건설 대표이사 조윤설
건삼인 제50호 - 녹화조경(주) 대표이사 김점식
28 건설산업정보 - Section 01
38 건설산업정보 - Section 02
53 건설관련 유권해석 및 판례
56 특별기고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양승오
- 암(癌)의 조기 진단이 유용한 예방책입니다.
58 그것이 알고싶다 하도급 분쟁 해법



PART 4

59 회원사 현황
62 건설업 중대재해 사례와 대책 - 철근콘크리트 공사(무너짐)
조적, 미장, 방수공사(떨어짐, 산소결핍)

SPECIAL

64 SPECIAL 01 소통하는 문화공간 - 힐링 무비
65 SPECIAL 02 소통하는 문화공간 - 힐링 북
66 SPECIAL 03 소통하는 문화공간 - 갈필 서예
68 SPECIAL 04 생활 속 유용한 꿀팁
69 SPECIAL 05 건강지킴이
70 SPECIAL 06 부산의 명소 - 부평강통시장
71 SPECIAL 07 세계의 아름다운 건축물 - 에든버러 성
72 SPECIAL 08 취미의 발견
73 SPECIAL 09 틈새 회화
74 SPECIAL 10 쉬어가는 유머
75 SPECIAL 11 틈새 스트레칭
76 SPECIAL 12 KOSCA 중앙회-전문건설공제조합 업무단신,
부산시회 2020년 4/4분기 주요일정 안내
77 SPECIAL 13 2020년 건설업 교육 일정 안내
78 SPECIAL 14 독자과 함께 - 독자의견 및 퀴즈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로 다시 한 번 저를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제12대 회장으로
선출해 주신 회원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김 세 원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제12대 회장

전문건설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로 다시 한 번 저를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제12대 회장으로 선출해 주신 회원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저를 지지해 주셨던 분이냐 지지하지 않으셨던 분, 모두를 하나로 포용하여 회원사 모두가 화합을 통해 새롭게 도약하는 임기 3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문건설업계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도전에 봉착해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과 국내외 전반의 경기침체로 건설산업이 위축되면서 수주물량이 크게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60년만에 이루어지고 있는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은 우리를 불확실한 미래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다시 한 번 중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습니다.

하지만, 힘든 난관을 극복하는데 '경험'만큼 확실한 자산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3년간 협회 부산시회장과 중앙회 부회장을 역임하면서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여, 회원사와 협회가 함께 더 높은 곳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년 전 제가 11대 회장으로 취임할 당시에도 우리 전문건설업계는 SOC사업의 축소 등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때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먼저 약속드린 것이 바로 '대통합'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가을, '쌍아울림'이란 이름으로 가을 밤하늘을 수놓은 아름다운 선율의 무대는 우리 부산전문건설업체가 하나로 화합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난날의 경험을 자산으로 삼아 작은 오해와 반목은 버리고 모두가 하나 되어 발전해 나가는 부산전문건설협회가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회원사 여러분!

새롭게 제12대 회장으로 취임하는 저에게 여러분의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다음과 같이 약속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회원사가 화합하고 소통하는 열린협회를 만들겠습니다.

전 회원사가 쉽게 협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열린협회를 통해 회원사가 서로 화합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둘째, 회원사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는 강한 협회를 만들겠습니다.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으로 인한 회원사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발주자 가이드라인에 우리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으며, 하도급 불공정행위 근절과 무등록 시공 척결을 위해서도 힘쓰겠습니다.

셋째, 회원사의 경쟁력 강화와 일감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협회를 만들겠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업권보호와 건설공사 물량확보를 위해 노력하여 주계약자 공동도급 등으로 회원사의 일감을 확보한 것이 약 1,020여억 원이 됩니다.

앞으로도 발주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과 생활형 SOC사업의 참여 확대 등을 통하여 회원사의 일거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전문건설기술위원회의 활동을 강화하여 회원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넷째,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해 나가는 함께 하는 협회를 만들겠습니다.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협회의 역할을 다하겠으며, 숙원사업인 관문공항을 가덕 신공항으로 유치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사 여러분!

지난 3년은 새하얀 도화지에 구도를 잡고 밑그림을 그리는 시기였다면, 앞으로 제게 주어진 3년은 아름다운 색으로 조화롭게 채색을 이어나갈 시기라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모두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아름다운 색채를 빛낼 수 있도록 회원사와 함께 하는 협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3년 후 ‘떠나는 뒷모습이 아름다운 회장’으로 여러분의 기억 속에 남을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가을의 풍성함처럼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 좋은 결실 맺으시길 바라며 사업 번창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1.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제12대 회장 김 세 원



제회의 및 행사



01 건설산업 생산체제 개편에 따른 업종별 분과회의

부산시회(회장 김세원)는 건설산업 생산체제 개편에 따라 7월 6일부터 「포장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강구조물공사업 분과회의」를 각각 개최했다.

분과회의에서는 업종별 등록 및 2019년도 건설공사 실적신고 현황을 보고하고 부산광역시교육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체비율 상향 조정, 부산전문건설업 체 하도급 참여율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상향,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및 특례 적용기간 고시에 대해 안내했으며, 건설산업 생산체제 개편에 따른 업종별 주요현안 및 의견을 교환했다.



02 제1차 부산전문건설기술위원회의

부산시회(회장 김세원)는 7월 6일 2020회계연도 제1차 부산전문건설기술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 날 회의에서 삼지건설(주) 이태원 위원은 “건설현장 드론 활용”과 “시기관 건설장비 활용” 등의 시공기술을 소개하며 우수 시공사례의 홍보를 건의하였으며, 거북건설(주) 이주상 위원 등은 건설산업 생산체제 개편에 따른 전문건설업계의 대응 방안에 대한 건의를 하였다.

이에 김세원 회장은 “우수 시공사례는 코스카레터를 통해 모든 회원사가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설산업 생산체제 개편 또한 전문건설업계의 수주 경쟁력 확보 및 우려와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협의·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업종별, 공종별 작업의 효율적인 방법, 공구의 사용 및 장비의 사용 방법 개선 등을 통한 원가절감 등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서부터 회원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들을 논의하여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나아가 기술개발을 위한 정부지원, 산학연계 지원 등을 통해 회원사의 기술력 향상을 통한 부산 전문건설업계의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에 많은 협조와 참여·활동해 줄 것”을 당부했다.



03 제1차 임원연석회의

부산시회(회장 김세원)는 8월 6일 「2020회계연도 제1차 임원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제11대 임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날 회의에서는 2020 건설의 날 수상자(옥산건설(주) 대표이사 유재봉)에 대한 시상식을 진행하고, 업종별 등록현황 및 2020년 상반기 협회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했다.

또한, 중앙회 김문중 건설정책실장이 배석하여 건설산업 혁신 세부 시행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04 2020회계연도 회장단, 감사, 업종별 운영분과위원장 간담회

부산시회(회장 김세원)는 8월 19일과 20일 양일간 「2020회계연도 회장단, 감사, 업종별 운영분과위원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건설산업 혁신 시행방안에 대한 업종별 현안사항을 청취하고 개선사항 등 의견을 수렴했다.



05 제2차 운영위원회의

부산시회(회장 김세원)는 8월 24일 「2020회계연도 제2차 운영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12대 대표회원 선출을 위한 주업종 등 결정 결과를 보고하고, 제12대 대표회원 선출방식 및 선출정수, 업종별 전체회의 개최일정, 업종별 운영분과위원회 구성인원 등을 결정했으며, 중앙회 11대 대의원으로 지산특수토건(주) 김형겸 대표이사를 보궐선출했다.





06 제12대 대표회원 등 선출을 위한 업종별 전체회의

부산사회(회장 김세원)는 9월 1일부터 4일까지 4일간 제12대 대표회원 등 선출을 위한 17개 업종의 「업종별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김세원 회장은 각 업종별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통해 “협회 회의 및 행사 참여도가 높고 업종별 회원사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덕망있는 분들이 대표 회원으로 선출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업종별 전체회의에서는 총회 구성원인 각 업종별 대표회원과 전국 업종별협의회 대표회원, 업종별 운영분과위원장 및 위원을 각각 선출하고, 업종별 현안사항에 대해서도 상호 협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부산사회에서는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는 만큼 회의시간 및 실내 50인 이상 참석회의는 분산 개최하고, 회의 전·후 방역 및 환기, 참석자 마스크 착용 및 2단계 체온검사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회의를 진행했다.



07 제3차 운영위원회의

부산사회(회장 김세원)는 9월 11일 「2020회계연도 제3차 운영위원회의」를 개최했다.

회장단, 운영위원 및 감사 총 21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제12대 회장 선거관리위원회 설치 및 위원 선임, 2020회계연도 제1회 임시총회 소집 및 부의안건을 결정하고, 중앙회 제36회 정기총회 포상대상자 및 부산광역시 2020년 자랑스러운 건설인상 추천 대상자를 선정했다.

● 제12대 회장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명단

(위원장, 부위원장, 연장순)

연번	상호	대표자	비고
1	경남종합조경	송유경	위원장
2	(주)부근건설	신종근	부위원장
3	다림조경(주)	이경훈	
4	(주)진성디이	박철훈	
5	(주)삼영건설	조윤설	

※ 제1차 선거관리위원회의(2020.9.14)에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호선했다

08 제12대 회장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회의

부산시회는 제12대 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9월 14일 「제1차 선거관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산시회 제12대 회장 선거관리위원회 정·부위원장을 호선(위원장 : 경남종합조경 대표 송유경 / 부위원장 : (주)부근건설 대표이사 신중근)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선거업무 진행을 위해 회장선거 관련 세부 기준 및 각종 서식(안)을 협의·결정했다.

또한, 9월 22일과 10월 7일에 각각 제2차, 제3차 선거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2대 회장 후보자 등록요건 서류를 심사하고 선거인 명부를 확정했다.



09 2020회계연도 제1회 임시총회

부산시회(회장 김세원)는 10월 8일(11:00 / 부산아시아드시티 2층) 제12대 대표회원 118명 중 94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회계연도 제1회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임시총회에서는 제12대 회장으로 단독 입후보 한 (주)세원이엔지 김세원 대표이사가 참석자 전원 만장일치로 추대되어 회장으로 선출됐으며 12대까지 연임을 하게 됐다. 임기는 2020년 11월 1일부터 2023년 10월 31일까지 3년이다.



김세원 회장은 “부산시회 11대 회장에 이어 12대 회장으로 재추대 해주신 대표회원 여러분께 한 번 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전하며, “앞으로의 3년 임기동안 회원사의 업권보호 등 공약사항을 성실히 실천해 우리 협회가 단합하고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당선소감을 밝혔다.

제12대 임원 및 대표회원 명단

● 회장

연번	상호	대표자	비고
1	(주)세원이엔지	김세원	

● 감사

(연장자순)

연번	상호	대표자	비고
1	신우개발	김문곤	회계
2	거북건설(주)	이주상	업무

● 부회장

(연장자순)

연번	상호	대표자	비고
1	건진개발(주)	심수율	
2	지산특수토건(주)	김형겸	
3	(주)보광	윤영갑	
4	경남종합조경	송유경	

협회 소식

• 운영위원(당연직 제외)

(연장자순)

연번	상호	대표자
1	(주)흥림건설	강갑균
2	(주)거도산업	김창욱
3	(주)우성엔지니어링개발	최상대
4	(주)서한기업	서쌍철
5	(주)공간조경	정석봉
6	(주)삼성도장	이관욱
7	(주)엔텍건설	나영찬
8	(주)보문하우징	김재용
9	광평건설(주)	주한식
10	건진개발(주)	심수율
11	자산특수토건(주)	김형겸
12	(주)보광	윤영갑

연번	상호	대표자
13	(주)금정토건	문준식
14	(주)동남엘리베이터	이민규
15	민성건설(주)	서영철
16	(주)삼영건장	조윤설
17	경남종합조경	송유경
18	(주)연동	반백철
19	녹화조경(주)	김점식
20	해진건설(주)	이상호
21	(주)솔석재	김기광
22	홍산건설(주)	신상기
23	(주)창성공영	안병호
24	삼지건설(주)	이태원

• 분과위원장

(업종순)

연번	업종	상호	대표자
1	실내건축	(주)보광	윤영갑
2	토 공	거보건설(주)	정영만
3	습식방수	건진개발(주)	심수율
4	석 공	(주)솔석재	김기광
5	도 장	(주)동아피앤씨	홍종욱
6	비계-구조물해체	(주)우성엔지니어링개발	최상대
7	금속구조물-창호-온실	광민건설(주)	최형선
8	지붕판금-건축물조립	(주)서우산업	이준희
9	철근-콘크리트	삼지건설(주)	이태원

연번	업종	상호	대표자
10	상-하수도설비	(주)일상건설	김철호
11	보링-그라우팅	자산특수토건(주)	김형겸
12	포 장	홍산건설(주)	신상기
13	수 중	해진건설(주)	이상호
14	조경식재	녹화조경(주)	김점식
15	조경시설물설치	(주)테마월드	신수정
16	강구조물	상화건설(주)	정인호
17	승강기설치	(주)동남엘리베이터	이민규
18	철도-궤도	-	-

• 대표회원

(회장, 업종, 상호순)

연번	주업종	상호	대표자	비고
1	강구조물	(주)세원이엔지	김세원	회장
2	실내건축	(주)그린이아이디	전삼록	
3	실내건축	(주)금강고려하우징	권동근	
4	실내건축	(주)동명종합건축	강태환	
5	실내건축	(주)디에이치디자인	임교순	
6	실내건축	(주)보광	윤영갑	
7	실내건축	(주)보문하우징	김재용	
8	실내건축	(주)비케이인테리어	이영기	

연번	주업종	상호	대표자	비고
9	실내건축	(주)빅인테리어	김상열	
10	실내건축	(주)삼신퍼스틸	임호성	
11	실내건축	(주)삼영건장	조윤설	
12	실내건축	(주)삼영디자인	김갑영	
13	실내건축	(주)삼인디자인건축	신정호	
14	실내건축	(주)성공디자인	정영수	
15	실내건축	(주)아랑존디	우범용	
16	실내건축	(주)에스디알공간건축	서영준	

연번	주업종	상호	대표자	비고
17	실내건축	(주)원디자인	윤기원	
18	실내건축	(주)이룸인테리어디자인	송상미	
19	실내건축	(주)이플랜	유진철	
20	실내건축	(주)일진아이앤씨	강병식	
21	실내건축	(주)향도건설	전응선	
22	실내건축	효원산업	김서연	
23	토공	거보건설(주)	정영만	
24	토공	구구건설(주)	정중화	
25	토공	(주)남경엔지니어링토건	이규화	
26	토공	무성토건(주)	김종한	
27	토공	민성건설(주)	서영철	
28	토공	(주)엔텍건설	니영찬	
29	토공	(주)주일건설	박강일	
30	토공	천지개발(주)	임철규	
31	습식방수	건진개발(주)	심수물	
32	습식방수	동경개발건설(주)	김미옥	
33	습식방수	(주)엠케이건설	정승태	
34	습식방수	옥산건설(주)	유재봉	
35	습식방수	(주)일성기업	천상우	
36	습식방수	(주)흥림건설	강갑균	
37	습식방수	(주)흥산건설산업	강용호	
38	석공	(주)솔석재	김기광	
39	석공	토암건설(주)	남기태	
40	도장	(주)동아피앤씨	홍종욱	
41	도장	(주)삼성도장	이관옥	
42	도장	(주)서한기업	서쌍철	
43	도장	신양아이엔지건설(주)	강동훈	
44	도장	(주)통영산업건설	강재준	
45	도장	(주)화승산업개발	김성현	
46	비계·구조물해체	광명환경(주)	이광식	
47	비계·구조물해체	(주)구덕종합개발	이안호	
48	비계·구조물해체	금탑건설(주)	이종범	
49	비계·구조물해체	명작건설(주)	박정구	
50	비계·구조물해체	(주)우성엔지니어링개발	최상대	
51	비계·구조물해체	(주)은성이앤씨	김기태	
52	비계·구조물해체	(주)진성디이	박철훈	
53	금속구조물·창호·온실	(주)거도산업	김창욱	
54	금속구조물·창호·온실	광민건설(주)	최형선	

연번	주업종	상호	대표자	비고
55	금속구조물·창호·온실	(주)국토건영	차수열	
56	금속구조물·창호·온실	대한코렌(주)	이홍규	
57	금속구조물·창호·온실	(주)동신창호	최순자	
58	금속구조물·창호·온실	석봉건설(주)	한상호	
59	금속구조물·창호·온실	신우개발	김문곤	
60	금속구조물·창호·온실	(주)에스엔코리아	강효정	
61	금속구조물·창호·온실	엠에스건설(주)	박성구	
62	금속구조물·창호·온실	(주)영주	정태환	
63	금속구조물·창호·온실	(주)창성공영	안병호	
64	금속구조물·창호·온실	(주)청산산업	강성구	
65	금속구조물·창호·온실	(주)테크유니온	신유정	
66	금속구조물·창호·온실	한일금속공업사	주병규	
67	금속구조물·창호·온실	(주)호승윈스피아	김찬복	
68	금속구조물·창호·온실	(주)화성건설	변용규	
69	지붕판금·건축물조립	(주)서우산업	이준희	
70	지붕판금·건축물조립	(주)이레패널	김진태	
71	철근·콘크리트	강남건설(주)	서정규	
72	철근·콘크리트	광평건설(주)	주한식	
73	철근·콘크리트	동우건설(주)	이기태	
74	철근·콘크리트	(주)모닝	손성우	
75	철근·콘크리트	목우건설(주)	정기현	
76	철근·콘크리트	삼지건설(주)	이태원	
77	철근·콘크리트	설원건설(주)	박정두	
78	철근·콘크리트	(주)성덕건설	김경식	
79	철근·콘크리트	(주)송인건설산업	이종열	
80	철근·콘크리트	아후건설(주)	김병흠	
81	철근·콘크리트	(주)엠지건설	박동남	
82	철근·콘크리트	(주)용마루건설	문현철	
83	철근·콘크리트	태영건업(주)	박판용	
84	상·하수도설비	거북건설(주)	이주상	
85	상·하수도설비	거북설비(주)	이민호	
86	상·하수도설비	(주)금광개발	김진영	
87	상·하수도설비	(주)금정토건	문준식	
88	상·하수도설비	(주)다인산업개발	박미란	
89	상·하수도설비	서정건설(주)	이성권	
90	상·하수도설비	서호건설(주)	손이순	
91	상·하수도설비	세고엔텍	김윤완	
92	상·하수도설비	신평건설(주)	정길찬	

연번	주업종	상호	대표자	비고
93	상·하수도설비	(주)연동	반백철	
94	상·하수도설비	옥상건설(주)	박동호	
95	상·하수도설비	(주)일상건설	김철호	
96	상·하수도설비	(주)천진	심재복	
97	상·하수도설비	(주)청복건설	정귀자	
98	보링·그라우팅	자산특수토건(주)	김형겸	
99	포장	강호건설(주)	강성호	
100	포장	남우산업개발(주)	황규진	
101	포장	삼덕이앤씨(주)	이삼현	
102	포장	일강건설(주)	정종택	
103	포장	흥산건설(주)	신상기	
104	수중	(주)덕성해양개발	이득생	
105	수중	해진건설(주)	이상호	

연번	주업종	상호	대표자	비고
106	조경식재	가산조경개발	조성민	
107	조경식재	경남종합조경	송유경	
108	조경식재	(주)공간조경	정석봉	
109	조경식재	(주)노은	박노환	
110	조경식재	녹화조경(주)	김점식	
111	조경식재	목도창조(주)	전병화	
112	조경식재	(주)서진조경	류향복	
113	조경식재	오현조경개발(주)	하영민	
114	조경식재	(주)원석조경	정진우	
115	조경시설물설치	(주)오승조경건설	허진영	
116	조경시설물설치	(주)테마월드	신수정	
117	승강기설치	(주)동남엘리베이터	이민규	
118	승강기설치	삼보엘리베이터(주)	김장호	

회원사 수주지원 및 확대를 위한 간담회 등 활동



01 건설업무 관계자 민·관 합동 워크숍

부산시회(회장 김세원)는 부산광역시와 공동으로 7월 2일(14:00 / 아시아드시티 2층 그랜드볼룸) 부산광역시 최대경 도시계획실장 및 부산지역 16개 구·군청,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사·공단 등 부산지역 20여 발주기관의 계약·공사감독·건설행정 담당공무원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업무 관계자 민·관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부산시회 김세원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건설공사 실 시공자인 부산전문건설업체의 일감 확보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 및 지역장비 활용, 건설근로자 고용 창출로 이어져 부산 경제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만큼, 참석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부산광역시 최대경 도시계획실장은 “부산경제 발전을 위해 부산시와 구·군 등 발주기관, 그리고 협회가 상호 협력해 좋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이날 워크숍에서는 ‘우수사례로 보는 공사발주·계약 등 건설제도’에 대해 부산시회 한종석 사무처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며, 부산광역시 건설행정과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시책 설명과 외부강사의 청렴특강 등이 있었다.



02 2020년 상반기 하도급홍보세일즈단 건설대기업 본사 방문

부산시회(회장 김세원)는 7월 28일부터 29일까지 양일간 부산광역시 하도급관리팀과 합동으로 수도권 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삼성물산(주), 대림산업(주), HDC현대산업개발(주)를 차례로 방문해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서 부산시회와 부산광역시 하도급관리팀은 “장기적인 건설경기 침체로 부산지역 건설산업이 매우 어려운 실정임으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부산전문건설업체의 협력업체 등록 및 입찰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줄 것”을 요청 했으며, “안전사고 예방과 하도급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건설대기업들은 “협회와 부산광역시가 수도권 지역에 있는 본사까지 방문하여 부산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만큼, 우수한 부산전문건설업체를 발굴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03 부산시의회 신상해 의장 간담회

부산시회 김세원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은 8월 14일 부산광역시의회의 의장실을 방문하여 신상해 의장과 간담회를 가지고 전문건설업계의 현안사항에 대한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부산시회 김세원 회장은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민간공사 수주물량 감소로 부산전문건설업체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부산광역시의회에서 도 지역 건설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추진과 지속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했다.

이에 신상해 의장은 “부산시회의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지역경제 및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중소전문건설업체에 도움이 될 만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답했다.



04 부산광역시 추석 명절대비 임금체불 예방 등을 위한 현장방문

부산시회(회장 김세원)는 9월 21일 부산광역시 하도급관리팀과 합동으로 「서대신5구역 주택 재개발정비사업」 등 지역 내 3개 대형건설현장을 직접 방문 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하도급대금 미지급,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교부, 부당특약 설정 및 임금체불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점검과 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실시한 것으로 건설업 무등록자에 대한 불법하도급 등 건설부조리에 대한 점검도 함께 이루어졌다.

이 자리에서 부산시회는 각 현장의 하도급공사에 보다 많은 부산전문건설업체가 참여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당부하고, 공종별 우수전문건설업체 추천이 필요한 경우 협회를 적극 이용해 줄 것을 안내했으며, 불법·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와 안전사고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현장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05 건설분야 전문가 법률상담 등 무료자문

부산시회(회장 김세원)는 10월 22일(14:00/부산전문건설회관 4층 회의실) 회원사의 고충해결과 당면한 애로사항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도움을 주기 위해 「건설분야 전문가 법률상담 등 무료자문」을 실시했으며, 회원사 임·직원 20여명이 참여해 법률·노무분야에 대해 도움을 받았다.

이날 상담에서는 부산시회 이윤근 자문변호사가 발주자 및 원도급사와의 분쟁에 대한 법적 대처방안 등에 대해 상담했으며, 여찬모 자문노무사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응방안, 건설현장 일용근로자 관리, 4대 사회보험 및 퇴직금 분쟁 등 노무분야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상담이 이루어 졌다.

06 2020회계연도 모니터 회의

부산시회(회장 김세원)는 10월 27일 부산시회 회장단 및 모니터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회계연도 모니터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김세원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협회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설문조사는 회원사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 발굴과 제도개선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회원사가 겪고 있는 애로사항 등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전달될 수 있도록 모니터 활동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부산전문건설 모니터 활동에 대한 추진경과 보고와 모니터와의 대화를 통해 전문건설업계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그동안 설문조사 등 모니터 활동에 적극 참여한 우수 모니터에 대한 포상도 실시했다.



회원소식



(주)테마월드 대표이사 신수정



종로 우리동네 놀이터 사업에 응모해 당선된 수송공원 조감도



01 (주)테마월드 대표이사 신수정 「종로 우리동네 놀이터 설계 공모전」 당선

부산 화명동에 본사를 둔 조합놀이대·조경시설물 설계제작 시공전문업체인 (주)테마월드(대표이사 신수정)가 뛰어난 기술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종로 우리동네 놀이터 설계 공모전」에서 당선됐다.

1998년에 창업한 (주)테마월드는 기존 놀이시설물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친환경소재로 신개념 로비니아 조합놀이대 등을 설계부터 시공, 사후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기술 강소기업이다.

이번 공모전은 ‘역사문화의 중심, 종로에서 아이들의 즐거운 만남’을 메인 주제로 응모해 전국의 우수업체들을 제치고 최고의 점수를 받았으며, 지금까지 획일화·정형화된 놀이터가 아닌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특색있으면서도 자연친화적인 디자인,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한 점이 큰 호평을 받았다.



수주지원

01 지역건설산업활성화를 위한 지역의무 공동도급 발주 협조

지역 자금의 역외유출을 막아야

부산시회는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다양한 지방중소건설업체 보호·육성정책 마련에 힘쓰고 있으며, 특히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는 지역 자금의 역외유출을 막고 부산에서 창출한 가치가 최대한 다시 부산에서 소비되고 재투자되도록 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을 주고 부산소재 중소기업체의 물량 확보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이다.

최근 부산예술고등학교에서 7월 28일 발주한 「부산예술고등학교 이 중천장교체 및 기타공사」의 경우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를 적용하지 않은 채 입찰공고되어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이 우려됨에 따라 부산시회는 7월 30일 부산예술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동 공사를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로 지정 발주해 줄 것을 요청한 한편, 부산광역시교육청 차원의 행정지도를 협조 요청하여 교육청 발주공사 중 전국 입찰참여 대상공사의 경우 부산지역 건설업체의 참여도가 49% 이상 될 수 있도록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발주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이에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는 부산시회의 건의사항을 수용하여 계약의 목적과 성질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발주할 수 있도록 권장 지도하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02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 전문건설업 등록여부 확인 추진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 진행 시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건설업 무등록 사업자가 시공할 경우에도 공사 계약서 작성 및 보증서 발행여부만 확인되면 지원금을 지원하는 등 건설산업기본법령 위반 사례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다.

※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 : 지방자치단체 주관으로 일정기간 이상 해당 지역에 주소 및 사업장을 두고 해당 사업을 운영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간판, 인테리어, 진열장치 등 개선 시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사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경미한 건설공사 등)의 규정에 의거 공사예정금액 1천5백만원 이상(자재가격 및 운임비 포함)의 전문건설

공사를 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적법하게 전문건설업을 등록한 전문건설사업자(실내건축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도장공사업 등)에게 발주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건설업 무등록자(일반사업자)가 1천5백만원 이상의 전문건설공사를 시공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건설업 무등록자에게 건설공사를 도급하여 시공도록 한 건축주는 건축법 제110조 제2호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강력히 규정하고 있다.

이에 부산시회는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부산광역시청 및 부산경제진흥원을 대상으로 건설업 무등록자와의 계약으로 인한 부실시공, 계약불이행, 하자분쟁 등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건설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사업 진행 시 해당 전문건설업의 등록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

03 건설업 무등록 시공 근절 추진

건설업 무등록 시공 근절 홍보문

사·구(군), 아파트관리사무소 등에 게재 건의

부산시회는 9월 10일 △부산광역시청 및 16개 구(군)청,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부산광역시회, △부산지역 150세대 이상 아파트관리사무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및 관련단체, △인터넷 등을 통해 무분별한 광고를 게재한 후 실내인테리어 및 리모델링 등의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건설업 무등록 시공 혐의 업체 등을 대상으로 건설업 무등록 시공 행위가 근절 될 수 있도록 추진했다.

부산시회는 건설업 무등록자들로 인해 건설거래 질서가 문란해지고 적법하게 등록된 전문건설업체의 건설공사 수주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함에 따라 전문건설공사를 발주할 경우에는 해당 전문건설업을 등록한 전문건설업체가 도급받을 수 있도록 무등록 시공 근절을 추진했다.

또한, 건설업 무등록 시공 혐의 업체에게는 전문건설업 등록방법과 협회 회원 가입시의 혜택 등도 함께 안내했다.

부산시회는 건설업 무등록자가 건설시장에 난립하지 않도록 건설업 무등록시공 행위 근절에 대한 안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불법 무등록 시공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04 단가계약공사(1개월 이상) 건강·연금 보험료 등 반영 추진

부산시회는 9월 16일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건설공사를 단가계약으로 발주할 경우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 줄 것을 부산광역시 및 산하 자치단체 등 부산지역 주요 발주기관에 건의했다.

부산지역 일부 발주기관에서는 단가계약 공사는 여러 개의 공사현장이 존재하고, 각 현장별 시공에 소요되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다는 이유로 관행상 국민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별도로 반영하지 않아 건설업체가 이에 대한 각종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되어 왔다.

이에 부산시회는 이를 개선하고자 국토교통부에 4대 사회보험 적용대상 공사는 계약의 종류가 단가계약이라 하더라도 달리 볼 여지가 없고, 전체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건설공사인 경우에는 보험료 반영 대상이라는 유권해석을 받아 부산광역시 및 산하 자치단체 등 부산지역 주요 발주기관에 각종 보험료 반영을 준수하여 줄 것을 건의한 것이다.

05 부산 산업단지 분양(입주)업체 정보 제공 추진

부산 산업단지 분양(입주)업체 사무실, 공장 등 신축공사 시 부산 전문건설업체 하도급 참여 확대 협조

부산광역시에서는 「2016년도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를 통해 부산 산업단지 지역 민간공사에 부산전문건설업체가 70% 이상 하도급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승인 허가 조건에 이를 권장하고 분양(입주)업체 정보를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건설관련 단체에 제공토록 심의의결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부산지역 산업단지의 경우 지리적 여건상 경상남도 와 울산광역시 등에 인접해 있어 타 지역 건설사업자가 산업단지 내 건설공사에 다수 참여함으로 인해 부산지역 자본의 역외유출이 심각한 실정이라고 부산시회 관계자는 밝혔다.

이에 시회는 부산지역 민간건설공사에 대한 부산전문건설업체 하도급 참여 확대를 위해 9월 18일 부산광역시(산업입지과)를 비롯한 산업단지 관리 기관인 부산경제진흥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산업단지관리공단 등에 분양(입주)업체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시회는 제공받은 분양(입주)업체 정보를 토대로 산업단지 내 사무실, 공장 등의 신축공사 진행시 부산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시회는 9월 23일 부산경제진흥원으로부터 예규장안일반산업단지와 오리일반산업단지 내 최근 분양(입주)업체 정보를 제공받았으며, 국림피엔텍(주), 대림텍스 등 23개 업체에게 산업단지 내 사무실, 공장 등의 신축공사시 부산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 확대를 추진했다.

06 2020년 하반기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 확대 추진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종합건설공사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 협조

종합건설업체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공사포기각서 사전 징구, 추가공사 불인정, 이면계약서 작성 강요 등 각종 갑질의 횡포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건설 거래질서가 붕괴되고 있으며, 이러한 갑질의 횡포는 건설시장을 넘어 사회 전반적으로 여전히 심각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종합건설업체의 하도급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과 부실공사 예방, 건설근로자 임금체불 근절 및 실시공자인 전문건설업체의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해 2010년부터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를 적극 도입·시행하고 있다.

부산광역시에서도 정부 정책에 따라 2019년 4월 24일 「민선7기 계약제도 종합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실시설계 단계에서부터 공정별 비율(금액)을 사전 검토하여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적용이 힘들 경우 발주부서의 감사관실 “사전컨설팅” 감사 검토결과를 반영토록 하고 있다.

이에 부산시회는 9월 28일 부산광역시 및 16개 구(군)청을 대상으로 2020년 추경예산 발주예정 공공공사 중 추정가격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종합공사에 대해 주계약자 공동도급으로 발주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제도개선

01 2021년 외국인력 도입계획 관련 의견제출

국토교통부에서는 「2021년도 외국인력 도입계획」과 관련하여 건설 현장 외국인력 도입규모 및 제도개선 사항 등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청했다.

이에 부산시회는 7월 14일 외국인력 도입 확대에 대한 의견을 국토교통부(중앙회 경유)로 제출했다.

국내 건설인력의 지속적인 고령화로 생산성이 감소되고 있으므로 건설공사를 실시하는 전문건설사업자 입장에서는 젊은 외국인력 도입 확대가 필요하며, 전문건설사업자들은 인력부족으로 인해 불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임에도 건설노조의 불법체류자 노동부 고발 등의 행위로 합법적으로 고용 가능한 외국인력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건설노조에서는 인건비 상승만을 목적으로 하는 무분별한 파업 등의 행위로 건설 기능인력 부족현상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으므로 건설일용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활용하고 있는 전문건설사업자는 외국인력 도입의 확대가 절실하다.

02 관급 아스콘 자재 납품·계약 제도개선 추진

7월 6일 개최된 포장공사업분과회의 시 건의된 아스콘 자재 공급에 관한 애로사항에 대해 부산시회는 다음과 같이 관련기관에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추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부산·울산·경남 아스콘공업협동조합 협조 추진
 - 포장공사의 품질확보와 대기시간 절약을 위해 포장공사업자가 아스콘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조합 내 아스콘업체 2개 이상 지정
 - 아스콘 대량 주문하는 대기업과 소량주문하는 전문건설사업자에게 동일한 수준의 일률적인 아스콘 납품단가 책정
- 조달청(중앙회 경유) 건의 추진
 - 현행 아스콘공업협동조합에서 아스콘업체를 배정하는 방식이 아닌 포장공사업자가 직접 아스콘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03 노동 관련 의원입법(안)에 대한 의견제출

부산시회는 7월 24일 한정에 의원이 입법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

개정(안)에서는 현행 2주 단위 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탄력근로제의 기간을 6개월 이내의 단위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공사기간이 정해져 있음에도 집중호우, 동절기, 혹서기 등으로 공사 중단 또는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건설현장의 여건을 감안할 때 탄력근로제는 1년 단위로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04 건설기술진흥법에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현행 법령에 따라 발주자는 신기술이 기존 건설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의 측면에서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신기술을 건설공사에 적용해 왔으나, 앞으로는 신기술을 무조건적으로 우선 적용하고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국토교통부에 보고토록 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에 부산시회는 신기술의 개발 및 사용 촉진의 취지에 따라 건설공사 발주시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는 것은 좋으나, 공사내용 및 현장여건 등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후 발주자의 판단에 따라 신기술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더 타당성이 있으므로 현행 법령 유지를 국토교통부(중앙회 경유)에 건의했다.

혁신적인 신기술도 많지만, 신기술이라 부르기 애매한 기술 또한 많으므로 공사내용 및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신기술 적용은 시공중 애로사항 발생 위험이 높으며 부실시공마저 초래할 수 있다.

또한, 발주기관에서 신기술 보유업체가 시설물유지관리업체라는 이유만으로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사용협약을 통해 시공할 수 있는 해당 전문건설업종을 배제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무분별한 신기술 적용이 자칫 업무영역의 침해로 확대될 수도 있다.

이에 부산시회는 신기술 적용의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기술진흥법의 개정을 반대하고 현행 법령 유지를 건의한 것이다.

05 전정작업(풀베기 등)시 안전시설물 설치 비용 반영 추진

부산시회는 8월 26일 부산지역 주요 발주기관을 대상으로 가로수, 화단 등의 전정작업, 제초작업 시 나뭇가지 및 돌 튀 등의 방지를 위한 안전시설물(가림막 등) 설치비용을 내역서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도심지에서의 가로수, 화단 등의 전정작업(풀베기 등) 시 나뭇가지 및 돌 튀 등으로 인해 인명 및 차량 피해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어, 조경식 재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들은 가림막 등의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동 공사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안전시설물의 설치비용이 공사내역서에 별도 반영되어 있지 않아 조경식재공사업체들의 부담이 되고 있어, 시회는 도심지에서의 가로수, 화단 등의 전정작업 발주시 작업인력의 적정 품의 반영과 인명·차량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비용을 내역서에 반영해 줄 것을 추진한 것이다.

06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발전 과제 제출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분리발주 대상 확대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서 지역건설사업자의 공사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지역제한이 가능한 공사(종합공사 100억원 미만, 전문공사 10억원 미만)의 경우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공구분할이나 분할발주 가능 여부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타 자치단체의 경우 관내 지역건설사업자의 수주기회 확대를 위해 국제입찰 대상금액(235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도 분리발주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으며, 경기도의 경우 수해 등 재해 복구공사까지도 분리발주를 검토하도록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에 명시되어 있다.

부산의 경우, 수해 등 자연재해공사에 대한 분리발주 검토체계가 미비하여 00발주기관에서 발주한 「00지역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 공사금액 178억 정도로 지역제한 발주에 해당되지 않아 전국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발주된 사례가 있다. 이로 인한 부산자금의 역외유출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시회 관계자는 밝혔다.

또한, 재해복구공사를 부산지역의 기후, 지형 등의 특성을 파악하고 있는 부산 소재 건설사업자가 도급·시공하지 않고, 타 지역 건설사업자가

도급·시공할 경우 부실시공 및 향후 신속한 하자보수가 되지 않아 안전사고 재발의 위험성이 증가될 수 있다.

따라서, 부산시회는 9월 4일 태풍, 장마, 수해 등의 재해로 발생하는 대규모 공사에도 지역제한 기준(종합공사는 100억원 미만, 전문공사는 10억원 미만)을 적용할 수 있도록 공구분할 등 분리발주를 의무적으로 검토하여 부산 소재 건설사업자들이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부산시 조례의 개정을 건의했다.

07 2020년 하반기 민관합동 규제발굴단 규제 개선과제 제출

부산시회는 9월 14일 부산광역시 규제혁신추진단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탄력근로제의 확대”와 “시공사 선택권 보장을 위한 아스콘 공급업체 선정 방법 개선”을 건의했다.

건설산업은 기후 및 현장여건 등으로 인해 집중호우, 동절기 등에는 작업이 불가능하거나 제한적으로 운영되므로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은 건설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건설사업자에게 작업시간 부족으로 인한 공기지연 등의 애로사항을 초래하고 있다.

현행 탄력근로제는 2주 단위 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나, 공사기간이 정해져 있는 건설현장에서의 적용은 현실과 맞지 않으며, 최근에는 6개월 이내까지 탄력근로제를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건설공사의 공사기간과 집중호우, 동절기, 혹서기 등의 공사 현장여건을 감안할 때 **탄력근로제 적용기간을 1년으로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관급공사에서 포장공사사업자가 아스콘을 납품받을 경우, 아스콘 공급업체를 직접 선택할 수 없고, 아스콘공급협동조합에서 순번제로 배정되는 아스콘공급업체를 통해 아스콘을 공급받고 있어 가격담합 및 납품지연 등의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공정한 경쟁을 통해 포장공사사업자가 직접 아스콘공급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개선을 건의했다.

08 건설산업기본법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부산시회는 7월 8일, 10월 12일 건설산업기본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국토교통부(중앙회 경유)에 건의했다.

주요 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건설사업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5억원 → 10억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 반대

- 과징금의 상한을 상향하는 것만으로는 부실시공을 방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중소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우 과도한 과징금 부과는 기업경영에 많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현행 유지를 건의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사업의 업종 전환 조건 완화

- 건설산업 업종개편에 따라 비계·구조물해체공사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사업과 함께 지반조성·포장공사사업(주력분야 :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을 추가로 등록하려는 경우, 2018~2020년까지 파일공사 및 비계·구조물해체공사의 실적을 각각 5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완화

■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 전환 제한

- 건설산업 업종개편에 따라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건설업종으로 전환 시 지반조성·포장공사사업, 실내건축공사사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사업, 상·하수도 설비공사사업 중 3가지 업종으로 전환이 가능하나, 현행 법령상 토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사업, 포장공사사업 및 상·하수도설비공사사업의 업무내용의 특수성, 전문성, 고유의 업무영역을 감안할 때, 업종 전환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 유지보수공사 실적관리업무 협회 수행

- 향후 신축공사와 유지보수공사를 구분함에 따라 유지보수공사 실적 접수·검증 및 실적확인서 발급업무 등을 현행대로 각 협회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 건의

09 시장진입 및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법령·자치법규·제도 등 개선 추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장진입 제한, 사업활동 제한, 가격규제 등 경쟁 제한적 규제를 발굴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각 건설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이 있었다.

이에 부산시회는 7월 24일 「부산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약관의 사용 의무화**”를 **권장사항으로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현행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제5항에 의거 건설기계 임대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며, 하도급법 제3조의2에서도 하도급계약시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부산시 조례에 따르면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은 권장하도록 하고, 건설기계임대차 표준약관의 사용은 의무화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 규제일 뿐만 아니라 하도급 받은 건설사업자보다 건설기계임대업자만을 보호하는 자치법규라며 이의 개선을 추진한 것이다.

또한, 부산시회는 10월 14일 **건설공사 수의계약 발주 시 광역시 안에 구와 군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군을 제외한 구 소재 업체 또는 구를 제외한 군 소재 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도록 개선**해 줄 것을 행정안전부(중앙회 경우)에 건의했다.

현행 지방계약법령에서는 광역시 안에 구와 군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건설공사 수의계약 발주시 견적서 제출대상을 군을 제외한 구 소재 업체 또는 구를 제외한 군 소재 업체만으로 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

광역시 안에 포함되어 있는 군의 경우 지리적 접근성이 좋고 교통이 비교적 편리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발주기관에서는 관내 업체에게도 급주기 위한 방법으로 추정가격 1억원 ~ 2억원 이하의 전문공사를 종합공사로 발주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 수의계약 대상공사

■ 종합 : 추정가격 2억원 이하

-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한시적 특례 적용('20.12.31까지)
: 추정가격 4억원 이하

■ 전문 : 추정가격 1억원 이하

-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한시적 특례 적용('20.12.31까지)
: 추정가격 2억원 이하

그리고 일부 건설업체들은 동 제도를 악용하여 실제 사무실은 그대로 두고 공사가 많은 지역(구 또는 군)으로 위장 전입하거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지자체가 관내 업체 보호라는 명분으로 지역 이기주의를 조장하고, 건설업종간 업역분쟁을 야기시키고 있으며, 더 나아가 건설부조리 행위 등을 부추기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사회 관계자는 밝혔다.

따라서, 광역시 안에 구와 군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건설공사 수의계약 발주 시 군을 제외한 구 소재업체 또는 구를 제외한 군 소재업체만으로 견적제출 대상을 제한할 수 없도록 관련 지방계약법령의 개정을 건의한 것이다.

2020년 3/4분기 신기술 현황



- 지정번호(지정일자): 891(2020.07.20.)
- 개발업체: 비티이엔씨(주), 한국토지주택공사, 현대엔지니어링(주), 삼표피앤씨(주)

»» 신기술명

매입말뚝 지지력 조기 확인을 위해 말뚝 중공부에 용수가열 히터를 이용한 시멘트풀 고온양생방법

»» 주요 내용

시향타 말뚝 주면 시멘트풀의 양생 시간을 단축하여 매입말뚝 주면마찰 지지력을 조기에 확인할 수 있는 용수가열 히터를 이용한 시멘트풀 고온양생 방법

- 지정번호(지정일자): 893(2020.07.29.)
- 개발업체: (주)쓰리디엔지니어링, (주)무영씨엠건축사 사무소, 대우조선해양건설(주), 동부건설(주), (주)포스코건설

»» 신기술명

콘크리트 충전 튜브형 상부 플랜지를 갖는 조립 H-Beam 공법(TH Beam 공법)

»» 주요 내용

기존 H형 단면 강재보의 상부 플랜지를 폐쇄형 튜브로 대체하고 그 내부를 공장에서 콘크리트로 충전한 강구조물 보에 관한 것으로, 콘크리트 충전 튜브형 상부 플랜지로 인해 휨 및 압축에 대한 국부좌굴강도, 횡자굴강도 및 비틀림좌굴강도 등이 향상되어 횡지지가새 및 작은보를 줄일 수 있어 장경간 지붕구조, 고하중 바닥구조, 크레인 주행보 등에 적용 시 구조성능이 향상되고 물량 절감이 가능한 공법

- 지정번호(지정일자): 892(2020.07.29.)
- 개발업체: 에스지신성건설(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주)내경엔지니어링

»» 신기술명

프리캐스트 블록과 미끄럼판을 이용한 기존 기계식 신축이음 대체공법

»» 주요 내용

교량 재령 수명을 고려한 신축 유간을 확보하고 프리캐스트 블록과 교대 흉벽 상단 접합면에 미끄럼판을 설치하여 상부 수평변위를 수용하는 기존 기계식 신축이음장치 대체 공법

- 지정번호(지정일자): 894(2020.07.30.)
- 개발업체: (주)한진중공업, (주)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주)수엔테크

»» 신기술명

지붕우수 활용을 위한 조립식 합성수지 터널박스와 점검구형 전처리조로 구성된 지중 빗물이용시설 시공방법

»» 주요 내용

지붕우수 활용을 위해 동일한 형상을 갖는 4개의 다공성 조립형 블록을 암수 맞물림 결합으로 조립하고 합성수지 터널박스를 전후/좌우/상하 방향으로 연결하여 조립한 빗물 저류조와 유입수 분산판, 침전 분리부, 미세여과처리장치를 통해 여과 및 침전 분리하여 빗물저류조로 유출하며, 저류된 우수는 조경 용수로 재이용할 수 있고 지상과 연결된 점검통로가 있는 점검구형 전처리조로 구성된 지중 빗물이용시설 시공방법

특허 및 신기술 소개

- 지정번호(지정일자): 895(2020.08.12.)
- 개발업체: (주)연우지앤비

》》 신기술명

합성전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한 내부지점부 슬래브와 상부개방형 강거더를 합성하는 강합성 거더공법(I.C.D 공법)

》》 주요 내용

공장에서 제작한 상부 개방형 강재거더와 거더 상부 플랜지 상면에 비합성 접착 시트를 부착한 이후 그 위에 전단포켓을 구비한 부도멘트부 상부 슬래브를 별도로 타설하고 비합성 상태에서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한 내부 지점부 PSC슬래브의 전단포켓에 무수축 모르타르를 타설하여 강거더와 일체화한 강합성 거더의 제작 및 가설 공법

- 지정번호(지정일자): 897(2020.09.01.)
- 개발업체: 우광티앤씨(주), 효성중공업(주), 진흥기업, (주)창민우구조건설탄트

》》 신기술명

기초 상면보다 높게 형성한 매트형 강재 엘리베이터 지하피트 구조물 설치 및 시공방법

》》 주요 내용

건축물 엘리베이터 지하피트에 관한 것으로, 기초 상면보다 높게 형성한 매트형 강재 엘리베이터 지하피트 구조물을 공장제작하여 현장에 설치 및 시공함으로써 시공편의성과 구 조안정성을 확보하고, 공기단축과 원가절감으로 경제성을 확보하며, 누수방지 및 유지관리에 유리한 공법

- 지정번호(지정일자): 896(2020.08.25.)
- 개발업체: (주)하경엔지니어링, 동부엔지니어링(주), 동부건설(주)

》》 신기술명

미니 파이프로프 수평보강 구조와 매입형 갱구구조물을 이용한 터널 갱구부 시공방법

》》 주요 내용

터널 갱구부 자연 비탈면에 미니 파이프로프로 보강하여 터널 갱구부 깎기 비탈면을 배제 또는 최소화시켜 터널 갱구부의 안정성 및 시공성을 향상시킨 터널 갱구부 시공방법으로,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터널 갱구부의 원지반 강도가 유지됨에 따라 내진성능이 향상되며, 갱구 구조물의 규모 축소가 가능하여 공사비 절감 및 외부로 돌출되는 갱구 구조물이 적어 자연친화적인 터널 갱구를 조성할 수 있음.

- 지정번호(지정일자): 898(2020.09.03.)
- 개발업체: (주)딥인스펙션, 한양대학교 에리카산학협력단, 에스큐엔지니어링(주)

》》 신기술명

도로터널 유지관리를 위한 고해상도 촬영장비 및 인공지능 알고리즘 기반 라이닝 표면의 균열 검출 기술

》》 주요 내용

도로터널 라이닝의 표면을 촬영하는 4K급 이상 고해상도 카메라(5개 이상)로 구성된 영상장비를 20~40km/hr의 일정한 속도로 주행하면서 도로터널 표면 영상을 확보하고 영상데이터를 분산병렬 처리하는 인공지능 알고리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도로터널 라이닝의 균열 정보(20km/hr 주행시 균열폭 0.1mm 이상, 30km/hr 주행시 균열폭 0.2mm 이상, 40km/hr 주행시 균열폭 0.5mm 이상)를 검출하고 수치화하여 자동적으로 외관조사망도와 보고서를 작성하는 기술

- 지정번호(지정일자): 899(2020.09.10.)
- 개발업체: 우경건설(주), 에스오씨기술지주(주), (주)천일, (주)건일

》》 신기술명

연속지점부 하부플랜지는 콘크리트로 합성하고 콘크리트 바닥판에는 PS 강선 긴장과 유지관리용 프리캐스트 정착구를 설치한 개구단면 박스거더 공법

》》 주요 내용

교량의 일반구간을 U형의 개구단면으로 구성하고 연속지점부 상부플랜지는 인장응력 발생구간을 폐합하여 상부의 인장응력을 강재가 부담하고 연속지점부 하부플랜지는 고강도콘크리트를 합성하여 부모멘트의 저항단면을 증대하며, 연속지점부 콘크리트 바닥판에는 PS강선으로 긴장하여 부모멘트에 의한 바닥판의 인장응력 및 균열을 저감할 수 있는 압축응력을 도입하고 별도의 바닥판 유지관리용 프리캐스트 정착구를 설치한 개구단면 박스거더 공법

- 지정번호(지정일자): 901(2020.09.16.)
- 개발업체: (주)티푸스코리아 쌍용건설(주), 롯데건설(주), 생고뱅이소바코리아(주)

》》 신기술명

트러스단열프레임과 발수처리 그라스울을 이용한 건식 외단열 시공기술

》》 주요 내용

기존 각 파이프 시공시 발생하는 열 손실 및 열교 현상을 저감하기 위해 아연도금 철판을 절곡하여 프레임의 상판 및 하판을 제작하고 상판과 하판은 스테인레스 강선을 트러스 형태로 용접하여 결합시키며, 그 내부를 무기계 섬유단열재인 발수처리 그라스울을 충전한 트러스 단열프레임과 외벽 단열재에도 발수처리 그라스울을 적용한 이후 차수를 위한 외부 투습방수 지와 기밀을 위한 내부 방습지를 설치하는 건식 외단열 시공방법

- 지정번호(지정일자): 900(2020.09.16.)
- 개발업체: SK에너지(주), (주)유신, 한국석유공업(주), 인성에이앤티(주), SK이노베이션(주)

》》 신기술명

수분저항성을 가지는 중온 아스팔트 조성물 제조기술

》》 주요 내용

친수성을 가지는 양단의 극성이 다른 중합체가 아스팔트와 골재 간 계면 활성화 작용을 유도하여 중온에서 아스팔트 혼합이 가능한 아스팔트 조성물 제조 기술

- 지정번호(지정일자): 902(2020.09.28.)
- 개발업체: (주)다음기술단, 우리기술(주)

》》 신기술명

제3종 교량시설물의 정기안전점검을 위해 휴대용 전자장비(Portable Electronic Device for safety & maintenance)를 활용한 상태평가 업무 지원기술

》》 주요 내용

제3종 교량시설물의 정기안전점검을 위해 교량의 정보를 서버에 저장하고 현장에서 휴대용 전자장비(Portable Electronic Device for safety & maintenance)의 Wi-Fi 및 QRcode로 시설물의 정보를 다운로드 받아 전자망도에 결함·손상 정보를 입력하면 외관조사망도가 작성되고, 알고리즘이 양호·주의·불량 상태로 구분하여 최저값 분석 및 종합상태점수가 산정되어 교량 시설물 안전등급이 평가되며, 결함·손상 통계분석 및 보고서 작성을 통해 교량시설물의 상태평가 업무를 지원하는 기술

출처

한국건설교통기술협회(www.kcnet.or.kr) ⇒ 신기술현황 ⇒ 지정현황(건설신기술)

변하지 않는 열정으로 끊임없이 도전하는 건삶인
(주)삼영건장 대표이사 **조 윤 설**



“
즉시 실천!
작은 일에 정성을,
모든 일에 최선을,
결과에는 책임을

”

인생의 연륜이 나이트처럼 새겨진 얼굴은 숨기려야 숨길 수 없다. 특히 눈은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알려준다. (주)삼영건장 조윤설(61) 대표. 단정한 옷차림에 화장을 곱게 했다. 하지만 눈을 보니 예사롭지 않다. 상대방을 바라보는 눈매가 살아 숨 쉰다. 여장부의 눈이다. 저 거친 전문건설시장에서 부대끼며 온갖 난관을 딛고 올라선 열정과 자신감이 느껴진다.

“땀과 눈물이 어우러진 삶을 살아왔다고 자부합니다. 하루를 30시간으로 산다는 각오로 이를 악물고 열심히 했어요.”

삼영건장의 사훈이 참 간결하면서도 멋지다. ‘즉시 실천! 작은 일에 정성을, 모든 일에 최선을, 결과에는 책임을’. 그렇게 했기에 부산 실내건축 공사업 시공능력 2위라는 발군의 성적을 낼 수 있었을 테다.

조 대표는 남편이 건축자재 사업(성장기업 대리점)을 해왔기에 오롯이 가정을 지키는 주부였다. 하지만 1990년대 초반 결제 대금으로 받은 어음이 부도나면서 남편이 엄청난 손실을 입었다. “이러다 아이들 공부도 못시키고 거리로 쫓겨나겠다는 공포감이 엄습하더라고요. 그래서 패션 대리점을 시작했죠.” 여기엔 깊은 뜻이 담겨있다. 한마디로 그녀의 대단한 기지가 발휘된 셈이다. 건축자재 대리점 사업은 자재를 현금으로 사서, 팔 때 어음으로 받는 장사였다. 하지만 패션대리점은 백팔십도 다르다. 어음으로 옷을 사고, 팔 때 현금으로 받는다. 거기다 남편 대리점에서 자재를 가져다 자신만의 컨셉으로 독특한 매장을 꾸미니 일석이조가 아닌가. 당시로서는 희귀했던 카드(신원 에벤에셀)를 도입한 효과도 톡톡히 봤다. 고객들이 몰리면서 사업에 불이 붙기 시작했다. 매장이 4개로 붙어났지만 조 대표는 3년 만에 과감히 사업을 정리했다. 남편 사업을 뒷바라지하고 한참 공부 중인 자식들을 돌보기 위해서. 그런데 천운이었는지 직후에 외환위기(IMF)가 들이닥쳤다. 건축자재가 귀해지면서 남편도 쓸쓸한 현금 장사로 재기의 길에 들어설 수 있었다.

아이들이 대학에 들어간 후 그녀는 다시 사업 쪽으로 눈을 돌린다. 1999년 기장 해변 바닷가에 90평짜리 레스토랑을 꾸몄다. 해외 잡지와 관련 서적들을 보며 엄청난 공부를 했다. “남편 대리점에서 자재를 신속하게 들여와 제가 생각한 유럽의 귀족별장 스타일로 꾸몄습니다. 당시로서는 일반인들이 접하기 힘들었던 이케아 제품도 선보였죠. 대박이었어요.” 2년간 영업하면서 자신감이 붙은 조 대표는 남편에게 인테리어 건축회사를 만들자고 제안했고, 대리점 2층 여유 공간에 삼영건장을 차렸다. “수업료(시행착오)를 엄청 지불했어요. 주점 등을 상대로 실내 건축사업을 했는데 공사비도 제대로 못받는 경우가 허다했어요. 이래선 안 되겠다 싶어 몸집이 큰 건설사를 상대로 사업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죠.” 빌라와 원룸 마루판 공사를 시작으로 착착 명성을 쌓아올렸고, 마침내 내로라하는 지역 전문건설업체로 성장시켰다.

조 대표가 지향하는 실내건축은 독특한 장소감(sense of place)을 창출하는 것이다. 회사 모토인 ‘인간 중심의 행복 공간’에 그 해답이 있다. 인간 냄새가 물씬 나는 휴먼스케일을 실내공간에 투영시키면서 생겨나는 장소감. 그곳에서만 느껴지는 행복 분위기를 만들자는 거다. 그걸 연출하기 위해 그녀는 책벌레가 되어야만 했다. 그러나 최고의 컨셉 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는 법. 건축자재의 품질이 보장돼야 하고, 세심한 시공, 그리고 꼼꼼한 현장 관리가 뒷받침돼야 한다. 조 대표는 열정과 땀으로 그걸 해냈다.

오늘날 그녀를 탄탄한 사업가로 성장시킨 또 다른 비결이 있다. 미래를 내다보는 눈이다. 기후협약에 따라 형광등이 LED(발광다이오드)로 대체될 거라는 사실을 예견한 조 대표는 10년 전 조명회사인 (주)큐브스를 설립해 자신만의 독특한 조명 연출에 힘을 쏟고 있다. “실내조명으로 이름난 중국 광저우에 연간 20회나 출장을 다니면서 공부했어요. 이제는 LED 하면 척척박사가 됐습니다.”

뿐만 아니다. 저출산 고령화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주택시장이 향후 내리막길을 걸을 것으로 판단한 조 대표는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수출로 눈을 돌리고 있다. 주타국은 동남아시아. 3년 전 캄보디아에 부동산 회사를 설립했다. “열정이 없으면 도저히 못할 정도로 힘든 일이었어요. 중간브로커나 에이전트 없이 제 혼자 힘으로 뛰었으니까요.” 앞으로 동남아 신도시프로젝트에 과감히 뛰어들 작정이다. 실내건축 분야에서 내공을 많이 쌓아왔기에 경쟁에서 이길 자신이 충분하다.

밀어붙이기에 능했던 젊은 시절과 달리 예순을 넘어선 지금 조 대표는 “많이 성숙해졌다”고 자평한다. 하지만 열정만은 여전하다. 사업 능력을 키우기 위해 다방면 공부에 열심이다. 동아대 경영대학원 석사 과정 총동문회장을 맡고 있는데, 대학원 50년 역사상 여성은 처음이라. 재작년에는 시인으로 등단도 했다. 시집 한 권을 남기는 게 그녀의 버킷리스트에 올라 있다.

꿈이 뭔지 물어봤다. “아름답게 늙어가야죠. 열심히 사는 것 못지 않게 베품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 대표는 제2의 인생사업을 구상하는 듯하다.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오래 살 것인지. 이런 말이 있다. ‘어리석은 사람에게 노년은 겨울이다. 현자에게 노년은 황금시대’.

글 · 최원열



끊임없는 성찰로 부지런히 달려온 건삶인
녹화조경(주) 대표이사 **김 점 식**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다.
바로 ‘행동’이다.”

첫인상이 차분하다. 신뢰감을 주는 저음에 조리있게 설명하는 김점식(60) 녹화조경(주) 대표. 건삶인이라면 거친 시장에서 모진 풍파를 헤쳐왔기에 일반적으로 강한 인상을 주는데, 김 대표는 학구열이 대단하다는 느낌이 든다. 과연 그랬다. 경남 함양 출신인 그는 부산의 명문 부산대 경제학과 출신이다. 대학원에서는 기술사업정책을 전공했고 신기술 개발에 매진해 지금까지 특허만 4개를 뒀다.

문과 출신인 그가 이과계통, 그것도 힘들기 짝이 없는 전문건설을 택한 이유가 뭘까. “체대 후 지인 소개로 2년간 한국도로공사 임시직으로 있으면서 경사면 조경의 필요성을 절감했죠.”

김 대표는 이후 부산시 공무원(행정직) 시험에 합격한다. 하지만 먹고 사는데 걱정 없는 공무원 자리를 그는 단박에 내던졌다. “한 조경회사 대표님을 만났는데 신기술을 소개해주면서 공무원보다 훨씬 더 매력적일 거라고 강조하더군요. 그 순간 ‘대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987년 조경회사인 목도창조(주)에 입사했다. 그해 10월 경남 부곡의 한 요양병원 비탈면 녹화 공사에 현장대리인으로 나섰다. 우리나라 최초로 습식공법이 적용된 기념비적인 사업이었다. “조경하면 나무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비탈면 녹화는 산지도로가 많은 우리나라에서 매우 중요한 부문입니다.” 습식공법이란 물을 섞은 인공토양을 비탈면에 붙여 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반면에 식생이 불가능한 급경사면에서는 물 없는 인공토양의 건식공법을 사용한다. “당시 현장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암반에서 식물이 자랄 수 있느냐며 입을 다물지 못하더군요.” 김 대표는 후일 오차가 많아 공기가 늘어나기 일쑤인 이 공법을 개선, 발전시켜 녹생토 공법이라고 명명했다. 한마디로 친환경적인 녹화사업방식을 현장에 적용시킨 주인공이 그였다.

부산에서는 1989년 제2만덕터널 절개면 암반 부위에 녹생토 공법을 처음으로 적용했는데, 지금까지도 식물이 잘 자라고 있다고 한다.

목도창조에서 20여 년 일한(그 중 10년은 경영사장으로 재직했다) 그는 2013년 창업을 했고, 친환경 녹생토 신기술을 무려 5가지나 개발했다. 그중에서도 산업폐기물인 하수오니(찌꺼기)와 펄프슬러지를 재활용하는 신기술은 단연 독보적이다. 하수오니는 당시 톤당 처리비만 20만 원 이상 들었다. 그런데 오히려 톤당 1만 원을 받고 하수오니를 수거해 녹생토를 생산하니 이야말로 ‘땀 먹고, 알 먹고’가 아닌가(당시 공무원 월급이 13만 원 정도였다). “원자재의 25%를 하수오니에서 확보하죠. 또한 경사면에 부착력을 주기 위해 펄프슬러지를 오니와 토분을 섞어 녹생토 자재를 만듭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어느덧 너도나도 하는 흔한 기술이 되어버렸고, 시장도 포화지경에 이르렀다. “30년 전과 현재 단가가 거의 같으니 경쟁력을 상실했죠.” 김 대표는 또 다른 어려움을 호소했다. 녹생토가 조달목록에 들어 있지 않아 경쟁입찰을 하기 어렵다는 거다. “목록에 포함되면 관급공사때 설계에 반영돼 적정 이윤창출이 가능해질텐데요.”

그에게 앞으로의 과제를 묻자 ‘신기술 개발’이라고 단언한다. 지금 구상하는 게 있다. 바로 바다 조경이다. 그는 바다에 접한 지역에 잘 적용되는 식생을 연구 중이다. “바위 위에서도 식물이 자랄 수 있듯이, 해안가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확신합니다.

염분을 중성화시킬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 게 관건입니다.” 신기술 개발에 대한 의지로 뚝뚝 땀 흘린 그에게 불가능이란 없어 보인다.

지역 조경업계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토로했다. 종합건설사 도급에만 관심을 쏟는 ‘우물 안 개구리’가 되어선 안 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시장을 좀 더 크게, 좀 더 넓게 봐야 합니다. 중앙부처를 봅시다. 수자원공사와 토지구획공사, 항만공사 등 시장은 널려 있습니다. 노력하면 문이 반드시 열릴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기술로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게 김 대표의 지론이다.

어릴 때 핸드볼선수였지만 특기생 진학이 좌절되자 공부에 매진해 부산의 명문대학에 합격한 것만 봐도 그는 의지의 한국인이라 할 만하다. 목표를 향해 온 힘을 쏟고, 모든 정성을 기울인 다음 그 결과를 기다리자는 것.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이 그의 좌우명이다.

그렇다. 성공의 시작점은 내면이다. 생각의 씨앗을 뿌리면 행동의 열매를 얻게 되고, 행동의 씨앗을 뿌릴 때 성공을 향한 문이 활짝 열릴 것이다. 그것은 끊임없는 쇄신과 변혁의 길이다. 경영전략가 게리 허벌은 그의 저서 <꿀벌과 게릴라>에서 이렇게 말했다. ‘어제까지는 꿀벌처럼 주어진 일만 열심히 하는 것이 생존전략이 될 수 있었지만, 오늘부터는 파격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혁신을 추구,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게릴라처럼 혁신하는 것이 생존전략이다.’

약자는 기회를 기다리지만, 강자는 기회를 만든다고 했다. 신기술 개발이 바로 그 기회다. 김 대표는 외친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다. 바로 ‘행동’이다.”

글 · 최원열



IMPORTANT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시행 안내**

01

하도급대금의 안정적 보호와 지급보증 관련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우리협회가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신용등급이 높은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제도 폐지를 골자로 하는 하도급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0606호(2020.4.7.)]

01 주요내용

- **신용등급에 따른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사유* 삭제**(제8조 제1항 제2호)
 - * 회사채 A0 이상 또는 기업어음 A2+ 이상(공정위 고시 제2016-18호)
- **직불합의 기한 설정**(제8조 제1항 제3호)
 - 직불합의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진 경우에만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

02 시행일: 2020. 7. 8. 부터

※ “신용등급 면제 폐지”는 시행일 이후 체결하는 원도급계약과 관련된 하도급계약부터 적용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 또는 건설법령정보 → 최근개정법령에서 확인 가능하다.

02

**건설업 관리규정
일부개정 안내**

국토교통부에서 건설업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설업 관리규정

[국토교통부 예규 제300호(2020.7.1.)]

01 주요내용

- 처분관청이 법령위반 의심 건설사업자에 대해 청문을 한 경우, 청문일자·내용 등을 건설행정정보시스템(CIS)에 입력 의무화
 - ※ 시행일 : 2021. 1. 1. 부터
- 청문절차 진행 시 제출된 추가 소명자료의 확인을 위해 지자체는 등록기준 심사 담당기관에 그 의견제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
- 부실 진단자(회계사, 세무사 등) 명단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가 관리

02 시행일: 2020. 7. 1. 부터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 또는 건설법령정보 → 예규·지침·고시·통첩에서 확인 가능하다.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가이드라인」 제정 안내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확산을 위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가이드라인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346호(2020.7.1.)】

01 제정배경

- 공정거래위원회는 자금이나 인력이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하여 대기업 위주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제도'에 지원하기가 어려운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모범업체 선정 제도를 마련

02 주요내용

- **신청자격**: 하도급법 상 원사업자 요건을 충족하고 모범업체 선정 직전 1년간 하도급거래가 있는 사업자(대기업 및 중견기업 제외)
- **선정기준**: 하도급업체의 권익 보호에 필수적인 항목(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여부, 하도급대금 평균 지급 일수) 등 선정 기준을 모두 충족
- **선정절차**
 - 신청서 접수 및 신청 안내(매년 9월 중)
 - 서류심사 및 현장 확인(매년 10 ~ 11월 중)
 - 최종심사 및 선정(매년 11 ~ 12월 중)
 - 관련 부처 통보 및 보도자료 배포(매년 12월 중)
- **인센티브**
 - 하도급거래 직권조사 면제(1년간)
 - 범부처 하도급 정책 네트워크에서의 각종 인센티브* 제공
 - * 국토교통부 상호협력평가 가점 3점, 조달청 적격심사 가점 0.5점, 금융위 신용등급 상향 및 대출금리 인하 등
 - 하도급 벌점 경감 3점 등

02 시행일: 2020. 7. 1. 부터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및 특례 적용기간
고시 안내**

행정안전부에서는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자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기간 동안 수의계약 대상금액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을 고시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0834호(2020.7.14.)】

01 주요내용

- 수의계약 대상 확대
 - 전문공사 1억원 → 2억원 미만
 - 종합공사 2억원 → 4억원 미만
- 경쟁입찰에 입찰자가 1인 뿐인 경우에도 수의계약 허용
 - 기존의 경우 재입찰 이후(입찰자, 낙찰자가 없는 경우) 수의계약 가능
- 입찰보증금 50% 인하
 - 입찰금액 대비 5/100 → 2.5/100
- 계약보증금 50% 인하
 - 계약금액 대비 15/100 → 7.5/100
- 대금지급 기한 단축
 - 청구일로부터 5일 → 3일
- 긴급 수의계약 사유에 '감염병 발생 및 유행' 추가
- 계약의 특수성으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공사의 경우 입찰공고시 원가 산정 기준* 공개
 - * 재료비·노무비·경비 책정기준,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비율
 - ※ 시행일 : 2020. 9. 14. 부터
- 담보책임 기간 산정 기준 개선
 - 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사용이 이루어진 경우 목적물을 인수한 날을 기점으로 기간 산정

02 시행일: 2020. 7. 14. 부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0-35호(2020.7.14.)】

01 주요내용

- 「수의계약 대상 확대, 경쟁입찰에 입찰자가 1인 뿐인 경우에도 수의계약 허용, 입찰보증금 인하, 계약보증금 인하, 대금지급 기한 단축」에 대하여 한시적 특례 적용

02 특례 적용기간: 2020. 7. 15. ~ 2020. 12. 31.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 또는 건설법령정보 → 최근개정법령에서 확인 가능하다.

05

지방계약 예규 「선금의 부채산정 제외」 관련 집행요령 마련 안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6호, 2020.6.12.) 개정사항 중 적격심사로 발주된 공사의 재무비율 평가시 공공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선금금의 부채산정 제외”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가 세부적인 집행요령을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01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사항

- 한시적('21. 6월말까지) 적격심사로 발주하는 공사의 재무비율 평가 시 공공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선금금의 부채산정 제외
- 시행일 : 2020. 6. 22. 부터

02 「선금금 부채산정 제외」 집행요령

- 부채산정 시 제외되는 범위는 재무제표의 부채 총액인지? 부채 중 국가·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받은 선금인지?
 - 국가·지자체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선금 중에서 적격심사평가의 판단기준일까지 정산되지 않은 선금을 의미함
- 선금을 지급한 국가·지자체 등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는?
 -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기관, 지방공사·공단, 지방출자·출연기관, 국가기관, 관련 법령에 따른 준용기관
- 2019회계연도 A사의 재무제표가 아래인 경우로서, 공공공사의 기성률에 따라 선금의 5억원을 정산했을 때 부채 제외금액은?
 - (예시) A회사의 재무제표상 자산총계가 150억원, 부채는 50억(유동부채 40억, 비유동부채 10억)
 - 유동부채 중 공사 선금은 30억(공공공사 20억, 민간공사 10억)
 - 부채에서 제외하는 선금대상은 공공공사 20억이고, 기성·준공에 따른 정산된 선금은 공공공사의 모수에서 제외
 - 따라서, 20억(공공공사 유동부채) - 5억(정산액) = 15억 부채에서 제외

※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IMPORTANT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내

06

건설기술인의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술진흥법

【대통령령 제30885호(2020.7.30.)】

01 주요내용

-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개편(영 별표 3)
 - 수행하는 업무에 관계없이 이수해야 하는 기본교육 통합(35h)
 - ※ (기존) 설계·시공(35h), 건설사업관리(35h), 품질관리(35h)
 - (개정) 구분없이 35h
 - 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인 최초교육 마련

- 교육기관 공모제 및 총량제 도입(영 제43조제2항)
 - 건설기술인 교육기관을 공모를 통해 지정하고, 3년마다 교육기관의 총량을 정함
- 종합교육기관 지정요건 조정(영 별표4)
 - (전임강사) 2명 → 3명, (전담직원) 3명 → 2명

02 시행일: 2020. 8. 1. 부터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건설법령정보 → 최근개정법령 또는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굴착공사 관련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안내**

07

굴착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굴착공사를 시작하기 전 도시가스배관이 묻혀있는지에 대해 굴착공사정보 지원 센터에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최근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도시가스배관 매설확인 요청시기가 굴착공사 시작 24시간 전으로 규정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90호(2020.8.25.)]

01 주요내용

- 도시가스배관 매설확인 요청(굴착 계획 통보)시기 규정
 - 굴착공사자는 굴착공사 시작 24시간 전까지 도시가스배관이 묻혀있는지에 관하여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 확인을 요청해야 함
 - ※ 토요일 및 공휴일은 요청시간에 미포함
- 굴착계획 통보 사항
 - 굴착공사 발주자의 회사명
 - 굴착공사자의 회사명 및 공사담당자 인적사항
 - 굴착공사의 종류·위치 및 공사 예정일자
 -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한 토지의 경우 가스사용자의 인적사항 및 시설명
 - ※ 신고처
 - (전화) : ☎1644-0001 상담사 안내 (인터넷) : www.eocs.or.kr
 - (모바일) : m.eocs.or.kr (모바일APP) : 굴착공사정보지원시스템
- 소규모급수공사 굴착계획 통보 예외조건 삭제
 - 기존 소규모 급수공사(급수를 위한 길이 10미터 이하·너비 3미터 이하의 굴착공사)의 경우 굴착계획 통보 없이 굴착공사 현장에서 도시가스사업자와 공동으로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을 협의하고 안전점검원 입회 아래 굴착공사를 시작할 수 있었으나, 동 공사도 굴착공사 전 배관 매설확인을 요청(굴착계획 통보)해야 함

02 시행일: 2020. 11. 26. 부터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건설법령정보 → 최근개정법령 또는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건설공사 공동도급운영 규정」 일부개정 공포·시행 안내

국토교통부에서 건설공사 공동도급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설공사 공동도급운영규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609호(2020.8.27.)]

01 주요내용

- 주계약자관리방식에서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공사시방서·설계도면·계약서·예정공정표·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안전 및 환경관리계획·산출내역서 등에 의한 품질 및 시공상태를 확인하게 하여 부적정한 경우 재시공 등 시정조치 권한 부여(제5조 제3항 신설)
-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계약이행에 대한 연대 또는 분담책임 범위를 안전·품질 분야로 확대(제9조 개정)
- 건설공사 공동도급운영규정에 따라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주계약자관리방식)의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한 연대 또는 분담책임 범위를 안전·품질 분야로 확대(별표1 제6조, 별표2 제6조, 별표3 제6조 개정) 등

02 시행일: 2020. 8. 27.(목) 부터

※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 또는 건설법령정보 → 예규·지침·고시·통첩에서 확인 가능하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내

고용노동부에서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01 주요내용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003호(2020.9.8.)]

-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신설·변경 시 검토사항 개선(제11조)
 - 국가직무능력표준과의 연계사항, 자격종목에 대한 검정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사항 추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293호(2020.9.8.)]

- 기능사 검정의 필기시험 면제 기준의 훈련생 훈련시간 조정(제18조)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훈련시간 1,400시간에서 1,200시간으로 단축
- 국가기술자격 종목 개편(별표2)
 - (신설) 제과산업기사, 제빵산업기사 (시행 : '22. 1. 1)
 - (폐지) 한복산업기사, 농림토양평가관리산업기사 (시행 : '23. 1. 1)

- (분할) 조선기사 → 조선선체기사, 조선의장기사 (시행 : '23. 1. 1)
- 특수용접기능사 → 가스텡스텐아크용접기능사,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기능사 (시행 : '23. 1. 1)
- (명칭변경) 용접기능사 → 피복아크용접기능사 (시행 : '23. 1. 1)

02 시행일: 2020. 9. 8. 부터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안내

10

국토교통부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공포·시행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006호(2020.9.8.)]

01 주요내용

- **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 확대**
 - 공공공사 : 3억원 → 1억원 이상
 - 민간공사 : 100억원 → 50억원 이상
 - ※ 시행일 : 2020. 9. 8.(화)부터
- **민간공사 발주자의 지급보증 또는 담보제공 제외 소규모 공사 규정**
 - 도급금액이 5천만원 미만 또는 공사기간 3개월 미만 공사
- **민간공사 발주자의 지급보증·담보제공 의무 위반시 처분규정 신설**
 - 과태료 : 100만원(1차), 200만원(2차), 300만원(3차) 부과

02 시행일: 2020. 11. 27.(금) 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754호(2020.9.8.)]

01 주요내용

- **민간발주자의 공사대금 지급보증 방법 신설**
 - ※ 시행일 전 도급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재하도급 포함)을 체결한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름
- **건설기계대여계약 이행보증 청구조건 및 금액 변경**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교부한 이후 요구 가능
 - 건설기계대여계약 금액의 10% → 5%
 - ※ 시행일 : 2020. 9. 8(화)부터

02 시행일: 2020. 11. 27.(금) 부터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 또는 건설법령정보 → 최근개정법령에서 확인 가능하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 안내

사업체에서 현장실습을 받고 있는 현장실습생의 안전을 근로자와 같은 수준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004호(2020. 9. 8)]

01 주요내용

- 위임 대상기관 명칭 조정(제115조)
 - (기존)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
 - (변경)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훈련시간 1,400시간에서 1,200시간으로 단축
- 현장실습생 보호조치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별표35)

02 시행일: 2020. 9. 8. 부터(단, 별표35의 개정규정은 2020. 10. 1.부터)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공포·시행 안내

국토교통부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공포·시행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102호(2020.10.8.)]

01 주요내용

- 부대공사 적용기준 고시 근거 신설 (제21조 제2항 및 제3항)
 - 부대공사의 적용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 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 (제31조의2 신설)
 -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종합건설사업자는 20% 범위 내에서 하도급 허용
 -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전문건설사업자는 20% 범위 내에서 하도급 허용
 - ※ 시행일 : (공공) `21. 1. 1, (민간) `22. 1. 1.
 - ※ 적용례 : 시행 후 최초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
- 공사대금 지급시스템 적용 공공기관 추가 (제34조의5)
 - 전자조달법 개정과 동일하게 중앙정부소관 공공기관은 예산규모 250억원 이상으로 제한
 - 지방공사·지방공단 및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으로 확대
 - ※ 시행일 : 공포한 날(`20. 10. 8)
 - ※ 적용례 : `20. 10. 8일 이후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

-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자료 요청 및 위탁근거 마련** (제44조의2 및 제87조 제1항)
 - 고용보험 가입현황, 가족친화인증 확인자료 등
- **외국인력 불법고용 시 하도급 참여 제한** (별표3의2 제2호 마목 및 바목)
 - 하도급 참여제한 기준(1회 : 1개월, 2회 이상 : 2개월) 신설
 - ※ 시행일 : `21. 12. 19.
 - ※ 적용례 : 시행 후 법 위반으로 처분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
 - ※ 경과조치 : 시행 전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함
-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 시 처분기한 신설** (별표6 제1호 사목)
 - 법령 위반 적발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처분
 - 1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종합건설업체에 하도급시 처벌 신설
 -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전문건설사업자가 20% 범위를 초과하여 하도급한 경우
 - ※ 경과조치 : 시행 전 위반행위의 경우 종전의 규정을 따름
- **건설업 교육 인터넷 사이버교육 근거 마련** (제12조의4)

02 시행일: 2020. 10. 8. 부터 (※ 각 조문별 시행일자 상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765호(2020.10.7)]

01 주요내용

- **건설업 면허 신청 시 기술인력 확인방법 간소화** (제2조 제2항 제5호)
 - 정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확인
 - ※ 시행일 : 공포한 날(`20. 10. 7.)
- **소규모 복합공사 제도 폐지** (현행 제13조의2 삭제)
 - ※ 시행일 : (공공) `21. 1. 1., (민간) `22. 1. 1.
 - ※ 적용례 : 시행 후 최초로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도급계약)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
- **종합건설사업자가 도급 가능한 전문공사의 범위 제한** (제13조의3 신설)
 - 종합건설사업자는 해당 업종(토목, 건축, 산업설비, 조경계열)의 업무내용에 해당되는 시설물로 한정하여 시공 허용
 - ※ 시행일 : (공공) `21. 1. 1., (민간) `22. 1. 1., (2억원 미만 전문공사 원도급) `24. 1. 1.
 - ※ 적용례 : 시행 후 최초로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도급계약)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
- **상호시장 진출 시 시공자격 판단을 위한 등록기준 확인절차 도입** (제13조의4 신설)
 - 전문의 종합공사 : 자본금(재무제표 등), 기술능력(보유현황 및 고용-산재보험)
 - 종합의 전문공사 : 기술능력(보유현황 및 고용보험), 시설-장비(임대허용)
 - ※ 시행일 : (공공) `21. 1. 1., (민간) `22. 1. 1., (2억원 미만 전문공사 원도급) `24. 1. 1.
 - ※ 적용례 : 시행 후 최초로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도급계약)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

- **건설공사 직접시공 실적 제출 서류** (제22조 제2항 제2호 신설)

 - 발주자가 직접시공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위탁기관에 통보한 서류(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한 확인을 포함)로 건설공사 기성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같음
 - ※ 시행일 : 공포한날('20. 10. 7.) 이후 최초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는 분부터 적용
- **건설공사 실적 인정 범위 개정 및 직접시공 실적 공시제도 도입** (제23조 제10항 및 제24조 제1항 제5호)

 - 발주자 서면승낙으로 하도급을 허용하는 경우(전문공사의 하도급, 전문의 종합공사 하도급 등)에는 실적의 2분의1 인정(전문간 재하도급 분은 불인정 ⇒ 2분의 1 인정)
 - 전문건설사업자가 주계약자 공동도급의 주계약자로 참여 시 부계약자 분 2분의 1 인정
 - ※ 시행일 : (공공) '21. 1. 1., (민간) '22. 1. 1.
- **하도급 계약의 통보서** (제26조 제2항 제6호)

 - 공동도급일 경우 공동수급협정서 포함
 - ※ 시행일 : 공포한 날('20. 10. 7.) 이후 최초로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도급계약)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
- **건설공사용 가설기자재 대금지급 보호대상 신설** (제27조의4 제2항 신설)

 - 비계·동바라·거푸집 중 8개 항목 지정, 부품 및 재료는 동일사업자에게 대여한 경우로 한정
 - ※ 시행일 : '20. 10. 8. 이후 최초로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도급계약)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
- **전자조달 시스템 적용 범위 확대** (제28조 제6항 제1호)

 - 5천만원 미만 ⇒ 3천만원 미만
 - ※ 시행일 : '21. 1. 1. 이후 최초로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도급계약)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
- **상호시장 진출시 상대업종 실적인정 특례 마련** (부칙 제6조)

 - (종합업체) 전문공사 도급시 종합공사 실적 중 3분의2를 전문공사 실적 인정
 - (전문업체)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 도급시 전문공사 실적 전부를 종합공사 실적 인정

02 시행일: 2020. 10. 8. 부터 (※ 각 조문별 시행일자 상이)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 또는 건설법령정보 → 최근개정법령에서 확인 가능하다.

**공정거래위원회,
「입찰담합 예방」 관련
안내**

협력업체 지원 또는 발주기관 업무 협조라는 선의로 입찰에 참여하였으나, 입찰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 규제 제도의 인지도 부족으로 처벌받는 업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부산시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찰담합 예방”을 위한 자료를 다음과 같이 회원사에 안내하며 입찰담합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 했다.

01 “입찰담합 예방” 자료 주요내용

- 입찰담합의 폐해
- 입찰담합의 유형
- 입찰담합 제재조치
- 입찰담합 주요 심결례
- 입찰담합 금지규정
- 합의의 의의
- 자진신고 감면제도

02 입찰담합에 따른 제제사항

- 시정조치 : 법 위반행위 중지 또는 금지 명령
- 과징금 부과
 - 관련매출액의 10% 이내(입찰담합은 계약금액)
 - 관련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20억원 이내
- 형사고발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법인 뿐만 아니라 개인도 고발)

※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2020년 하반기
표준품셈 및 항만공사
표준시장단가 개정 안내**

부산시회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0년 하반기 표준품셈 및 항만공사 표준시장단가를 회원사에 안내했다.

01 2020년 하반기 건설공사 표준품셈(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896호, 2020.6.30.)

- 안전시설물 품 신설
 - 낙하물방지망(시스템방호), 수직형 추락방망, 안전난간대 등
- 폐기물 산정기준 현실화
 - 건설폐기물 발생량 기준 제시(폐보드류, 폐목재료 등)

02 항만 및 어항공사 표준시장단가(해양수산부 공고 제2020-1008호, 2020.6.30)

- 유사공사군별 평균증감율 반영 등 현실화
 - 2020년 상반기 단가 대비 2.09% 상승(332단가)

※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03

IMPORTANT**건설현장 국민연금·
건강보험 신고·납부 안내**

건설현장 사업장 적용신고를 하지 않은 현장은 일용근로자가 1개월간 8일 미만 근로했다라도 본사 기준을 적용 받아 각 현장별 근로일수가 합산되며, 이에 따른 국민건강 및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사업장 적용신고는 '공사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이면서 계약서에 '사후정산내용이 포함됐거나 도급(하도급) 산출 내역서에 국민연금·건강보험료가 반영'돼 있어야 한다. 분리 적용을 하지 않으면, 현장단위별로 8일 미만 근로한 근로자도 신고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사업장 분리적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현장소재지 관할 공단지사에 건설공사 준공 전까지 △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 △사업장가입자격취득신고서 △보험료 일괄경정고지신청서 △공사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부산시회는 「건설현장 사업장 적용신고」가 반드시 선행(고용·산재보험의 사업개시신고와 별개)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미신고(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업장 분리적용 방법 등을 회원사에 안내했다.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04

**건설기술인 최초교육
이수 안내**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최초로 등급을 취득한 건설기술인은 건설기술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전 최초교육(기본, 전문)을 이수해야 한다. 현재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교육훈련 이수 방법이 온라인으로만 진행되고 있기에 해당 교육기관 문의가 필수적이다. 2022년부터는 최초교육을 미이수한 건설기술인의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본격적으로 부과될 예정이기에 더욱 많은 주의가 요구된다.

01 교육대상

- 최초로 등급을 취득하고 건설기술 관련 업무를 수행하려는 건설기술인

02 교육 이수시기 및 시간

- **교육시기** : 건설기술 관련 업무를 최초로 수행하기 전에 이수
- **교육시간** : 기본교육(35h), 전문교육(35h)
- **교육방법** : 집체교육(오프라인) 또는 인터넷교육(온라인)
※ 오프라인(집체)교육은 코로나19 상황 진정 시까지 잠정 중지

02 종합교육기관(6개)

- 온라인(인터넷)교육 가능기관(4개)

교육기관	홈페이지	연락처
건설기술교육원	www.kicte.or.kr	032-463-4901
건설산업교육원	www.con.or.kr	02-575-7123
건설기술호남교육원	www.hicte.or.kr	062-513-0116
영남건설기술교육원	www.cte.or.kr	1544-7660

- 온라인(인터넷)교육 불가능기관(2개)

교육기관	홈페이지	연락처
건설공제조합 건설경영연수원	edu.cgbest.co.kr	043-850-4522
전문건설공제조합 기술교육	www.kscfcac.co.kr	043-879-2411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05

「공정거래위원회- 건설업계 상생협약 선언식」 동참 안내

공정거래위원회와 전문·종합 건설업계는 지난 7. 16(목) 양 협회장 및 상위 10대 종합건설업체·협력업체 대표 자가 모여 건설업 원·하도급자 간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다짐하는 「상생협약 선언식」을 개최했다. 이에 부산사회는 행사 주요내용과 상생협약 선언문 주요내용을 회원사에 안내하며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건설업계 상생협력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01 행사 주요내용

- 목적 : ‘코로나 19’ 사태 극복과 상생협력 추진 및 불공정거래행위 방지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건설업계 간 간담회 개최
- 일시 : 2020. 7. 16.(목), 10:15 ~ 11:45
- 참석자
 - 공정거래위원회 : 조성욱 위원장, 기업거래정책국장 등
 - 전문건설협회 : 중앙회장, 10대 종합업체 협력사 대표
 - 건설협회 : 건설협회장, 10대 종합업체 대표
 - ※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림산업, 지에스건설,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롯데건설, HDC현대산업개발, 호반건설

02 상생협약 선언문 주요내용

- 공정거래위원회 실천 선언
 - 공정경제 실현을 위해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노력 적극 장려
 - 불공정거래행위 개선 및 동등하게 협상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노력
 - 법 위반 업체의 신속하고 자발적 피해구제 노력 적극 장려 등
- 종합건설업계 실천 선언
 - 선급금 지급 및 금융지원 확대
 - 표준하도급계약서 100% 사용, 하도급대금 100% 현금지급 및 계산서 발행일로부터 10일 내외 지급
 - 착공전까지 서면(계약서 등) 발급,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공기연장, 계약금액 합리적 조정 및 지체상금 부과 금지
 - 이익을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 설정 금지 등

■ 전문건설업계 실천 선언

- 저가투찰 지양, 공사품질제고 노력 및 부당한 공사 지연 행위 근절
- 불가항력적 사유로 공사 지연 시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금조정 등 대안 마련 노력
- 원사업자의 안전조치 및 산재예방 활동 협조 노력
- 낙찰금액을 높이기 위한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등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06

**건설기술인 교육제도
변경 안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885호, (2020.7.30.)]개정으로 인해 건설기술인 기본교육이 통합되고 건설사업관리 최초교육의 면제 기준 등이 변경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01 기본교육 통합 및 축소

현행	변경
- 설계시공기술인 : 35시간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35시간 - 품질관리기술인 : 35시간	(업무 구분과 상관없이) 35시간

02 건설사업관리 최초전문교육 훈련시간 증가

현행	변경
- 초급·중급 : 35시간 - 고급·특급 : 70시간	- 초급·중급 : 70시간 - 고급·특급 : 105시간

03 계속교육 이수시기 통일

현행	변경
- 설계시공기술인 : 매 3년이 지나가기 전 - 건설사업관리/품질관리기술인 : 매 3년이 되는날 전후 6개월	업무수행기간 매 3년이 지나기 전

04 교육훈련의 면제 기준 변경

- 설계시공 최초교육 → 건설사업관리 최초교육 면제
- 설계시공 승급교육(고·특급) → 건설사업관리 승급교육(고·특급) 면제
- 품질관리 최초 및 승급교육 → 설계시공 최초 및 승급교육 면제 X
 - ※ 더 이상 품질관리교육의 이수를 통한 설계시공 교육 면제 불가. 단, 제도 시행일 직전(2020.7.31)까지 품질관리 교육을 이수한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설계시공 최초·승급교육 면제 가능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건설업자의 주요
신고·통보제도 이행
절차 안내**

부산시회는 8월 12일 건설관련 법령 미숙지로 인한 법률 위반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건설업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주요 신고 및 통보제도에 대해 회원사에 안내했다. 특히 건설공사 대장의 기재사항 통보 시 최근 공사대금 수령사항 등의 세부 기재사항 누락까지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시키는 사례가 잇따라, 기재사항 변경이 발생할 경우 모두 통보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01 건설업 등록증(수첩) 기재사항 변경신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 제2항, 시행령 제12조의3, 시행규칙 제9조)

- 건설업 등록증, 건설업 등록수첩의 기재사항 중 상호,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법인(주민)등록번호,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 위반 시 제재사항(동법 제100조 제1호)
 - 과태료 1차 : 30만원, 2차 : 50만원, 3차 이상 : 50만원

02 건설공사 도급(하도급) 계약서 작성(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2항, 시행령 제25조)

- 도급금액, 공사기간 등 계약서에 명시하여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 보관
-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작성 권고
- 위반 시 제재사항
 - 계약서 미작성 : 과태료 150만원(동법 제99조제2호)
 - ※ 단, 하도급인 경우 하도급받은 건설업자는 제외.
 - 도급금액, 공사기간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 과태료 50만원(동법 제99조 제2호)

03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보(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4항, 시행령 제26조)

- 도급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
- 도급금액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중 4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건설업자는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www.kiscon.net)
-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 계약사항에 변경이 발생할 경우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www.kiscon.net)
- 위반 시 제재사항
 - 시정명령(동법 제81조 제3호)
 - 시정명령 불이행 시 과태료 1차 : 100만원, 2차 : 200만원, 3차 이상 : 400만원(동법 제99조 제3호)
 - ※ 단, 건설공사대장(하도급건설공사대장 포함)의 기재사항 통보를 공사 완료일까지 통보하지 아니 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할 경우 즉시 과태료 처분
 - ※ 공사대금 수령사항 등의 세부 기재사항 누락에 주의 요구
 - ※ 물품납품 등을 현장설치조건으로 계약하였으나, 시공(현장설치) 후 건설공사 실적으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에는 건설공사에 해당되므로 건설공사대장 통보를 하여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 원도급 1억원 미만 하도급 4천만원 미만의 범위에서 공사금액이 변경된 경우 통보하지 않을 수 있음

04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2,3항, 시행령 제34조의 4)

- 수급인(원사업자)은 건설공사 하도급계약(변경계약 포함)시 하도급대금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하수급인(수급사업자)에게 교부 하여야함. 또한 도급계약 당사자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도록 함.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면제 기준
 - 1건의 하도급계약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의 경우
 -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절차에 관하여 발주자·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 위반 시 제재사항
 - 시정명령(동법 제81조제4호)
 -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동법 82조 제1항 제8호)
 -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않은 건설업자 : 시정명령(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 ※ 시정명령 불이행 시 : 하도급대금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3 제3호)

05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 시행령 제64조의 3, 시행규칙 제34조의 4)

- 수급인(원사업자) 또는 하수급인(수급사업자)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현장별이 아닌 건설기계 대여계약별로 지급보증서 교부가 가능한 경우
 - 도급금액이 1억원 미만이고 착공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인 경우
 - 하도급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고 착공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
 -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에 기재된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원 미만인 경우
-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면제 기준
 -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절차에 관하여 발주자·건설업자 및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
 - 1건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금액(1개의 건설현장에서 동일한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20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계약하는 경우 각각의 계약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 위반 시 제재사항
 - 시정명령(동법 제81조 제4호)
 -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동법 82조 제1항제8호)

06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통보(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4, 시행령 제64조의 4, 시행규칙 제34조의 5)

- 건설업자가 타워크레인에 대하여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 위반 시 제재사항(동법 시행령 89조 별표7의 서목)
 - 과태료 1차 : 100만원, 2차 : 200만원, 3차 이상 : 300만원

07 하도급 등의 통보(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4항, 시행령 제32조)

- 하도급을 한 자는 하도급 계약 체결 날부터 30일 이내 발주자에게 통보
- 다시 하도급 하는 것을 승낙한 자는 승낙한 날부터 30일 이내 발주자에게 통보
- 하도급계약 등을 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도 30일 이내 통보
- 위반 시 제재사항(동법 제99조 제5호)
 - 과태료 1차 : 100만원, 2차 : 150만원, 3차 이상 : 150만원

08 건설공사 현장의 사고 신고(건설기술진흥법 제67조 제1항, 시행령 제105조 제1항)

- 건설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건설공사 참여자(발주자는 제외)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 1천만원 이상의 재산피해발생시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사고발생 경위, 조치사항, 향후 조치계획 등의 사항을 2시간 이내 통보
 - 건설공사안전관리 종합정보망(www.csi.go.kr), 전화팩스 및 기타 그 밖의 적절한 방법 활용 가능
- 위반 시 제재사항(동법 제91조 제3항 제16호)
 - 과태료 1차 : 200만원, 2차 : 250만원, 3차 이상 : 300만원

08

**폭염, 화재폭발예방시설
보조지원사업 안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산업현장의 화재·폭발사고를 근절하기 위하여 건설업 등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환기팬 등 화재·폭발 예방설비 보조 지원을 신청할 경우 금년도(2020년)에 한하여 예산소진 시까지 구매·취득비용의 전액을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01 지원대상

- 건설업 등록증(건설산업기본법)을 보유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건설업본사 중 작년 혹은 올해 공사실적이 있는 업체
 - ※ **지원제외대상** : 산재보험가입 업종 중 건설업(코드 400**), 상호 출자 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공공단체,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상위 700위 이내 토목·건축건설업체, 산재보험 미가입(체납)사업주 등은 지원 불가
 - ※ 건설현장별 신청불가하며, 건설현장 추락방지용 안전시설(시스템 비계) 임차비용과 구분하여 별도 지원

02 지원금액 : 동일 사업주 당 최대 3,000만원

- 폭염예방설비 : **공단 판단금액의 70% 지원**
- 화재·폭발예방설비 : **공단 판단금액의 100% 지원**
 - ※ 임의처분, 손망실(사업주 귀책이 없는 경우 제외) 시 보조금 환수

03 지원품목

- 폭염예방설비 : 이동식에어컨(최대 200만원/ea), 그늘막(최대 50만원/ea)
 - ※ 이동식에어컨의 경우 사무실용 사용불가
- 화재·폭발예방설비 : 유증기 급배기 환기팬(방폭형), 후렉시블덕트, 비상대피유도선(등) 임시소방시설, 용접작업 불연포, 복합 가스농도측정기, 가스 검지 및 경보장치(감시시스템), 유해가스 모니터링 시스템

04 신청방법

- 지원신청 : 클린사업홈페이지(clean.kosha.or.kr)를 통해 신청
 - ※ 사업예산 소진시 까지 선착순으로 지원

※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09

공정거래위원회, 「최근 하도급법령 개정사항」 안내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부산, 울산, 경남에 소재한 사업자 등의 각종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예방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서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법의 이해를 위한 “최근 하도급법령 개정사항 교육자료” 홍보를 요청함에 따라, 부산시회는 회원사에 등 교육자료를 안내했다.

01 주요내용

-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요건 완화
- 부당한 경영간섭행위 유형 구체화
 - 원사업자의 전속 거래 강요행위, 원가 등 경영정보 요구 행위 등을 부당한 경영간섭행위로 간주
- 보복조치로 보는 행위 범위 확대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원사업자가 거래 단절 등을 통해 보복하는 행위를 보복조치로 간주
- 3배 손해배상 책임을 저야할 행위 범위 확대
 - 원사업자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보복행위에 대하여 3배 손해배상책임을 규정
- 단순한 기술자료 제공행위도 위법으로 규정
 - 기술자료의 “유용”단계까지 이르지 않는 기술자료의 단순 “제공” 행위 금지
- 기술유출행위조사 착수가능 기한 연장
 -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조사착수가능 기한을 거래 종료 후 3년에서 7년으로 연장
- 서면실태조사 방해행위 금지 및 과태료 부과 근거 신설
 - 공정거래위원회의 서면실태조사를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원사업자의 행위 금지 및 과태료 부과

- **하도급분쟁조정 의뢰 요건 완화**
 -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사업자의 매출액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 의뢰할 수 있도록 조정의뢰 요건을 완화
- **경영정보요구 정당화 사유 구체화**
- **신용등급의 수준을 불문하고 원사업자에게 하도급업체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보증의무를 부여**
-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면제 요건 강화**

02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신고 및 문의

-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하도급과(☎051-460-1041)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하도급 분쟁 관련
상담신고 기구
적극 활용 안내**

10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건설하도급 불공정행위에 따른 회원사의 피해 구제에 애로가 발생하고 신속한 피해구제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부산사회는 공정하도급 문화정착과 회원사 권익보호를 위한 각종 상담기구와 신고기구를 안내하며 회원사에서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01 상담기구

- **불공정 하도급 상담센터(대한전문건설협회)**
 - 불공정 하도급 행위로 피해를 입은 회원사에게 건설관련법령, 법률 자문 및 분쟁조정신청 등 전문적인 상담과 효과적인 피해구제 방안을 원스톱으로 지원
 - 상담문의 : 협회 공정거래정책부(02-3284-1087)
- **법률상담센터(대한전문건설협회-전문건설공제조합)**
 - 협회 - 조합 공동으로 회원사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법률, 노무, 세무·회계 업무 및 불공정 하도급 피해 등의 고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상담·지원
 - 상담문의 : 유선상담(02-3284-3000), 팩스(0502-284-6445) 방문상담 신청 시 팩스로 신청서 제출

02 신고기구

-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기구)**
 - 하도급거래 시 발생하는 분쟁을 복잡한 소송절차를 통하지 아니하고 하도급자의 피해 구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적극적으로 조정 진행
 - 신고문의 :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02-549-2105/6)

- **익명제보센터**(공정거래위원회)
 - 하도급대금미지급, 거래상 지위 남용, 불공정거래 행위 등 원도급자의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신원노출 없이 익명 신고
 - 신고방법 : 공정위 홈페이지(<http://www.ftc.go.kr>) 익명제보 등록
-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국토교통부)
 - 불법하도급(동일업종, 재하도급), 이중계약, 무면허 하도급, 저가 하도급(적정성심사) 등 건산법 위반 행위의 조사처리 및 행정처분
 - 신고방법 : 협회 담당자(02-3284-1087)와 상담 후 해당 국토관리청으로 신고 안내
- **불공정거래 신고센터**(중소벤처기업부)
 - 하도급대금 미지급, 부당특약 또는 부당감액, 설계변경 미반영 등 하도급법, 상생법 위반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불공정 피해 해소를 위한 법률서비스 지원과 신속한 피해구제 상담
 - 신고방법 : 협회 담당자(02-3284-1087)와 상담 후 불공정거래 상담신청(<https://poll.mss.go.kr/policy/policyCounForm.do>)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2020년 하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 (시중노임단가) 안내

건설공사 예정가격 작성 및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노무비 산출근거로 활용되는 「2020년 하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시중노임단가)」이 통계청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공표·승인(제365004호) 되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01 조사개요

- **조사목적** : 건설부문에 고용된 기능직종의 시중노임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여 건설공사 원가 산정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토록 함.
- **법적근거** :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제365004호)
- **조사 기준기간** : 2020. 5. 1. ~ 5. 31.
- **조사방법** : 자계식 우편조사·인터넷 조사와 타계식 현장실사 병행 실시
- **이용상의 주의사항**
 - (1) 통계전반에 걸쳐 사용한 「-」의 기호는 조사되지 않았거나, 비교불능을 나타냄
 - (2) 본 조사노임은 1일 8시간 기준(단, 잠수부는 6시간 기준)금액임
 - (3) 직종번호 앞의 「*」표시는 조사 현장수가 5개 미만인 직종, 「**」표시는 조사되지 않은 직종이므로 유의하여 적용

02 조사내용

■ 평균임금현황

- (1) 전체직종 : 226,947원[2020년 상반기(222,803원) 대비 1.86% 증가]
- (2) 일반공사 직종 : 215,178원(2020년도 상반기 : 209,168원)
- (3) 기타 직종 : 231,739원(2020년도 상반기 : 247,534원)

■ 직종별 노임단가 : (첨부파일) 2020년 하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 참조

03 2020년도 하반기 노임적용시점 : 2020. 9. 1. 부터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모집**

국도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기존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건축물의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한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동 사업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를 상시 모집하고 있다. 부산사회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참여하는 등의 다양한 혜택이 있어 관련 내용을 회원사에 안내했다.

01 그린리모델링이란?

- 에너지 소비가 많고 오래된 기존 건축물을 에너지 비용이 절감되는 쾌적한 건물로 리모델링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시장 창출과 일자리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써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7조에 따라 국도교통부의 인정을 받은 사업

02 신청기간 : 상시접수 · 등록

- 분기별 1회 이상 등록요건 부합여부 확인 후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지정

03 등록신청 및 제출서류

- 등록신청 : 그린리모델링 홈페이지(www.greenremodeling.or.kr) 온라인접수
- 제출서류 : 동 홈페이지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모집 공고문 참조

04 기타사항

- 사업자등록 유효기간 :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2년
- 문의 :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031-738-4963, 1600-1004)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IMPORTANT

건설부조리 및 불공정 하도급행위에 대한 신고 안내

부산시회는 회원사의 고충해결을 위해 건설업 무등록자들의 불법도급 행위 등 건설부조리 행위와 원사업자(종합건설업체)로부터 겪고 있는 각종 하도급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시회에서는 상시적으로 건설부조리 및 하도급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받고 있으며, 건설부조리 및 하도급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적극 활용할 것을 회원사에 안내했다.

01 주요내용

- 신고하는 곳 :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051-633-0260, FAX : 051-633-0261)
- 신고기간 : 상시 접수
- 신고방법
 - 방문신고 : 부산시회 사무처(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황령대로30번길 30, 전문건설회관 4층)
 - FAX 신고 : 부산시회 사무처(FAX : 051-633-0261)
- 신고대상 및 유형

○ 건설부조리행위 신고 유형

- 전문공사를 건설업 무등록자가 도급(하도급 포함) 및 시공하는 행위
- 건설업등록 업종과 다른 건설공사를 도급받는 행위
- 건설업체가 직영시공으로 위장하여 건설업 무등록자에게 시공하게 하는 행위
- 건설업체 이사 등 등재한 후 소속 건설업체의 건설업등록을 이용하여 건설공사를 도급받거나 시공하는 행위
- 기타 건설부조리행위 등

○ 하도급불공정거래행위 신고 유형

-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않거나 부당하게 감액하는 행위
- 추가공사 지시 또는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으나 반영하여 주지 않는 행위
-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 원사업자가 하도급계약 시 부당특약 유형을 설정하는 행위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여주지 않는 행위 등 각종 하도급불공정거래 행위

02 신고서식

- 부산시회 홈페이지(www.kosca21.or.kr) → 회원전용공간 → 불법·불공정행위 신고에 게재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 및 사용 전 검사업무
안내**

부산광역시에서는 금년 4월 1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기계설비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공사 내 기계설비공사(설계도서)의 착공 전 확인 및 사용 전 검사업무를 시행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01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대상 건축물

-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
- 에너지 대량소비 건축물
 - 냉동·냉장시설, 향온향습시설 또는 특수청정시설 500㎡ 이상 건축물
 - 5층 이상 아파트
 - 660㎡ 초과하고 4층 이하 연립주택
 - 500㎡ 이상 건축물(목욕장, 물놀이형 시설, 수영장)
 - 2천㎡ 이상 건축물(기숙사, 의료시설, 유스호스텔, 숙박시설)
 - 660㎡ 이상 건축물(판매시설, 연구소, 업무시설)
- 모든 지하철역사 및 2천㎡ 이상 지하도 상가

02 검사신청 : 해당지역 구(군)에 신청

- 착공 전 검사신청
 -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신청서[별지 제4호서식]
- 사용 전 검사신청
 - 기계설비공사 사용 전 검사신청서[별지 제7호서식]

※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지하수법의 유출지하수 관련 제도 안내

지하수법 제9조의2에 의거하여 지하 시설물 또는 대형 건축물 공사 시 환경부 기준 이상으로 지하수가 유출되는 경우에는 이를 감소시킬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신고하고 그 대책을 시행하여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공 후 기준 이상으로 지하수가 유출되는 경우에는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신고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01 행정사항

- 공사 중 기준* 이상의 유출지하수 발생 시 지하수가 유출되는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감소대책'을 신고 및 시행
- 준공 후 기준 이상의 유출지하수가 지속 발생 시 유출되는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용계획'을 수립 및 신고

* 환경부 기준 : 지하철 역사, 터널 전력구 및 통신구 1개소당 지하수가 1일 300톤 이상 유출되는 경우 또는 특광역시의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이상인 건축물 1동당 지하수가 1일 30톤 이상 유출되는 경우

02 신고방법

- 유출감소대책신고서(지하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2 서식) 및 유출지하수이용계획신고서(제13호 서식)을 작성하여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03 위반자에 대한 제재

- 지하수법 제37조의3에 따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지하수법 제39조에 따른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하도급부당특약
(손해배상액의 예정)
개선 조치**

하도급계약서에 명시된 부당특약 삭제 추진

하도급법 제3조의4 제2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2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원사업자(종합건설업체)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할 수 없으며, 하도급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자재구입처 지정 등으로 하수급인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강요할 수 없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부당특약 심사지침 개정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원사업자에게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 표준하도급계약서 상 손실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이행보증금(계약금액의 10%) 전액이 원사업자에게 귀속된다는 약정을 부당특약 예시로 명확히 명시하고 있다.

부당특약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336호, 2019. 12. 31.)

<부당특약 예시>

- ① 수급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원사업자에게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 표준하도급계약서상 손실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이행보증금(계약금액의 10%) 전액이 원사업자에게 귀속된다는 약정

그러나, 최근 00종합건설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부산사회 회원사로부터 하도급계약서 중 「계약불이행시 위약금으로 보증채권자에게 전액 귀속된다」라는 부당특약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었으며, 시회는 하도급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부당특약을 확인하였다.

이에 시회는 7월 16일 00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계약 변경(동 부당특약 사항 삭제)을 요청하였으며, 미개선 시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통보했다.

그 결과, 9월 24일 00종합건설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부산사회 회원사를 포함한 32개 전문건설업체가 동 부당특약 사항을 삭제한 하도급 변경계약(45건)을 체결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앞으로도 건설업 무등록자들의 불법도급 행위 등 건설부조리 행위와 원사업자(종합건설업체)의 각종 하도급불 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시회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며, 회원사의 권익보호를 위해 적극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건설현장 공사 계약기간 변경 시 간접비 증액청구 가능여부

? 건설현장 공사 계약기간 변경 시 간접비 증액청구 가능여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함) 제66조 및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23조제1항에 따라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해야 합니다.

귀 질의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라면 간접노무비, 경비, 해당보험료, 각종 보증서 연장에 소요되는 추가 비용에 대해 계약금액 증액 조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구체적인 경우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기간 증감사유, 증감기간, 투입공량, 관련규정 등을 살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거 국민신문고 전자민원, 2020. 10. 07.



하도급 업체 선정에 있어 위법 여부

? 하도급 업체 선정하는 프로세스 상의 위법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01 _____
 가격입찰을 통한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 입찰시행 전에 서면 공시를 통하여 본 입찰은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과정이며, 최종 결정가는 조정될 수 있다고 통지한다

02 _____
 최저 제시가 업체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

03 _____
 우선협상 대상자와 최종협의를 통한 금액결정

상기와 같은 프로세스로 진행 시 부당감액에 해당하는지?

! 귀하의 민원내용은 최저가입찰을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후, 가격협의를 거쳐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하도급법'이라 함)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지) 위반여부에 대해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에서는 원사업자가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최종 낙찰자 결정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낙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단가를 결정하는 행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 동 건의 경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해 최저가입찰이 사실상 최저가 경쟁입찰과 실질이 같고, 최종 낙찰자 결정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낙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단가를 결정하였다면 하도급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의 답변 내용은 귀하의 민원내용을 기초로 한 것으로서 구체적 사실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추후 공정거래위원회를 기속하지 아니함을 알려 드립니다.

근거 국민신문고 전자민원, 2020. 5. 26.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다9304 판결 [공사대금][공2001.11.1.(141),2237]

? 판시사항

01

수급인의 하자보수책임의 인정 여부의 판단 기준

02

수급인의 하자보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도급인의 공사대금지급채무는 당해 하자가 발생한 부분의 기성공사대금에 한정되는 것인지 여부(소극)

03

자기 채무의 이행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는 경우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04

도급인이 하자보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동시이행의 항변을 할 수 있는 기성공사대금의 범위가 하자 및 손해에 상응하는 액수에 한정된다고 한 사례

05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어서 공급자가 선이행의 자기 채무를 이행하였으나 이행기가 지난 전기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거나 또는 후이행의 상대방의 채무가 아직 이행기가 되지 아니하였으나 이행기의 이행이 현저히 불안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공급자가 이행거절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판결요지

01

도급계약에 따른 수급인의 하자보수책임은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관하여도 성립되는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이라 함은 도급계약에 따른 일이 전부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하자가 발생한 부분의 작업이 완료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도급인이 하자보수를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보수하여야 할 하자의 종류와 정도를 특정함과 아울러 그 하자를 보수하는 적당한 방법과 그 보수에 요할 비용 등에 관하여 심리하여 봄으로써, 그 하자가 중요한 것인지 또는 그 하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더라도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지 않는 것인지를 가려보아 수급인의 하자보수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02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자보수의무와 동시 이행관계에 있는 공사대금지급채무는 당해 하자가 발생한 부분의 기성공사대금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와 달리 본다면 도급인이 하자발생사실을 모른 채 하자가 발생한 부분에 해당하는 기성공사의 대금을 지급하고 난 후 뒤늦게 하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어 공평에 반하기 때문이다.

03

일반적으로 동시이행의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그러한 항변권을 행사하는 자의 상대방이 그 동시이행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거나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이 실제적으로 어려운 반면 그 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항변권자가 얻는 이득은 별달리 크지 아니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행사가 주로 자기 채무의 이행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그 항변권의 행사는 권리남용으로써 배척되어야 할 것이다.

04

미지급 공사대금에 비해 하자보수비 등이 매우 적은 편이고 하자보수공사가 완성되어도 공사대금이 지급될지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도급인이 하자보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동시이행의 항변을 할 수 있는 기성공사대금의 범위는 하자 및 손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한정하는 것이 공평과 신의칙에 부합한다고 한 사례.

05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어서 재화나 용역을 먼저 공급한 후 일정기간마다 거래대금을 정산하여 일정기일 후에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에 공급자가 선이행의 자기 채무를 이행하고 이미 정산이 완료되어 이행기가 지난 전기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거나, 후이행의 상대방의 채무가 아직 이행기가 되지 아니하였지만 이행기의 이행이 현저히 불안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536조 제2항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공급자는 이미 이행기가 지난 전기의 대금을 지급받을 때 또는 전기에 대한 상대방의 이행기미도래채무의 이행불안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선이행의무가 있는 다음 기간의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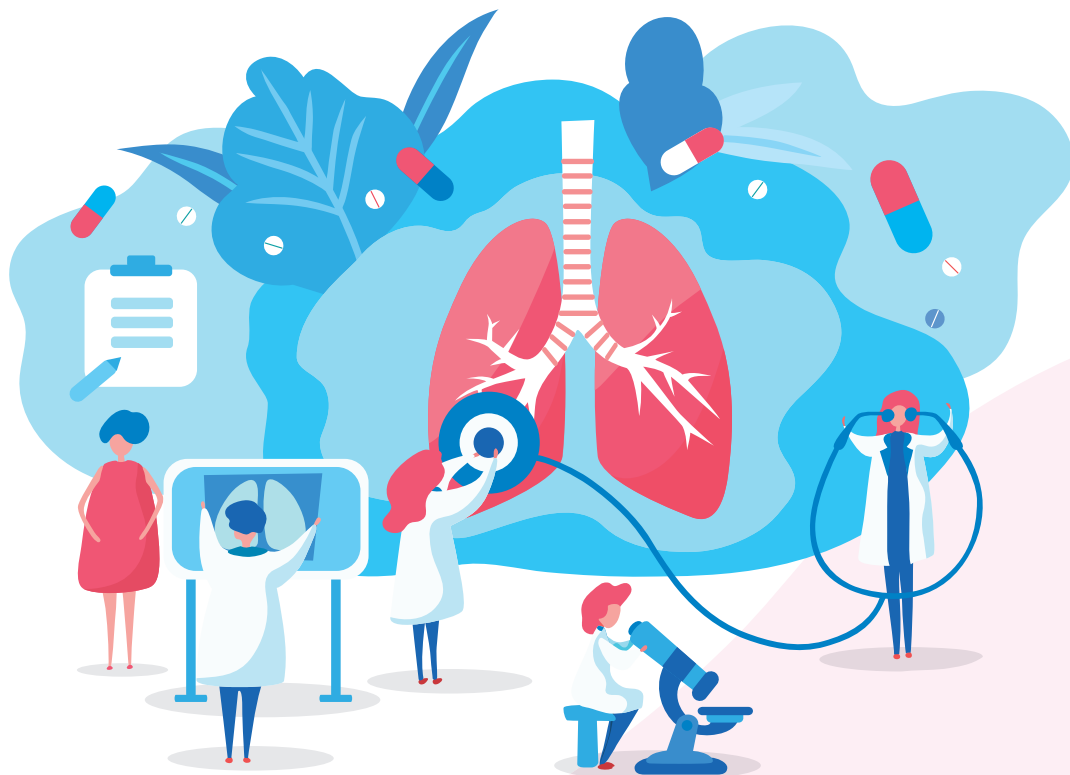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서성 유지담(주심) 배기원

암(癌)의 조기 진단이 유용한 예방책입니다.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양승오

이번에는 검진을 통해 진단된 폐암의 CT(전산화단층촬영)와 전신 PET/CT(양전자방출 전산화단층촬영)를 소개합니다.
2000년대부터 우리나라 남자 암환자 사망률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폐암의 급격한 증가는 우려할 일이지만,
주원인이 흡연으로 잘 알려져 있으므로 금연의 실천과 조기검진을 통한 건강관리가 절실합니다.
필자의 영상의학과(당시 이름은 진단방사선과) 전공의 시절에 주임과장이셨던 K은사님은 30여년 전 제주도의 학회 모임에 참석하시던 중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하셨고, 당시 응급실에서 촬영한 가슴방사선사진의 일부에서 아주 조그마한 덩어리가 발견되어,
조직검사를 거쳐 초기폐암으로 확진된 후, 수술로 떼어 낸 병력이 있으십니다.
아무리 사망률(5년 생존율 30% 내외)이 높은 폐암이라도, 조기 발견만 되면 완치될 수 있다는 좋은 예로 생각됩니다.
삼성서울병원 흉부외과에서는 초기폐암의 경우 80%가 넘는 5년 생존율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평소에 자신의 가족력이나 생활습관의 취약점을 잘 이해하여 아무 증상이 없을 때 건강검진을 규칙적으로 할 것을 권장하고 싶습니다.



5년 전부터 고지혈증과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이던 N씨(50)는 한 달 전부터 시작된 기침 감기 증세가 잘 낫지 않아서, 가슴사진과 CT, PET/CT가 포함된 건강진단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가슴의 단순방사선촬영에서는 오른쪽 허파의 상부 안쪽으로 음영이 조금 증가된 병소가 있고(그림 1 왼쪽 별표), CT에서는 동일한 장소에 경계가 울퉁불퉁한 덩어리가 보여서 폐암을 의심하였습니다(그림 1 오른쪽 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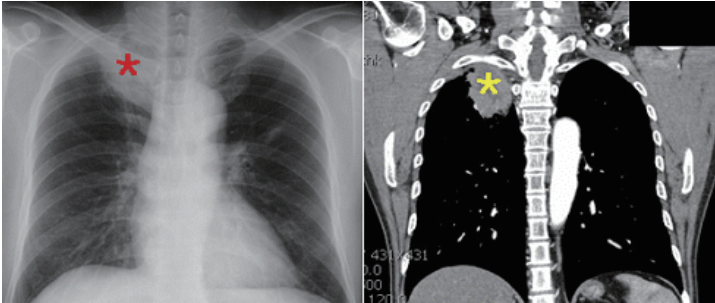


그림 1. 단순 방사선 가슴영상(왼쪽), 가슴 CT의 관상면 재구성 영상(오른쪽)

동시에 시행한 N씨의 전신 PET/CT에서는 오른쪽 허파의 같은 부위에 F-18-FDG 방사성동위원소가 표준섭취계수(SUV) 12.4이상으로 증가되어 빨갛게 보였습니다(그림 2의 화살표 부위). 수술을 하기 전에 악성 여부에 대한 조사를 얻기 위하여, CT 영상을 이용하는 세침 흡인생검술(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FNAB)을 시행하여 흡연과 가장 밀접한 인과관계가 있는 편평상피세포암(squamous cell carcinoma)으로 최종 진단되었습니다(그림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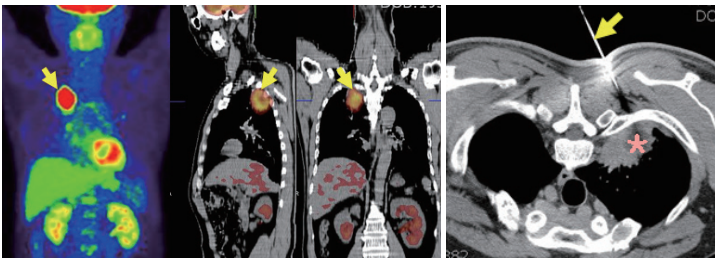


그림 2. 왼쪽부터 PET/CT의 MIP 영상과 시상면, 관상면 PET/CT 영상

그림 3. CT를 이용한 허파 조직 세침생검술 영상: 얇은 상태에서, 세침(화살표)이 별표(*)로 표시된 종양의 중심을 뚫고 있다.

20세부터 하루 한 갑씩 담배를 즐겨 피워왔던 폐암의 고위험군인 N씨는 수술 후 경과를 관찰 중이며, 현재로는 재발의 증거가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Box 건강 정보로 폐암의 원인, 예방과 치료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게재합니다. KOSCA letter 독자 여러분의 건강한 나날을 기원합니다.

건강정보

폐암의 원인

폐암의 원인으로 가장 잘 알려진 것은 흡연으로, 폐암의 약 85%는 흡연에 의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약 15%의 폐암은 담배를 피운 적이 없는 사람에게 생기며 이들의 대다수는 여성이다. 폐암을 일으키는 흡연 외의 원인으로는 간접흡연, 석면, 라돈, 비소, 카드뮴, 니켈 등의 금속과 폐섬유화증 등이 있다. 유전적 요인도 폐암에 걸릴 확률이나 폐암의 예후와 관련이 있다.

폐암의 예방과 치료

폐암 예방을 위한 생활수칙의 첫 번째는 바로 '금연'인데 흡연은 폐암뿐 아니라 다른 모든 암 발생의 원인이지만, 특히 폐암은 80-90%가 흡연과 관련이 있다. 최근에 흡연과 관련이 없는 중년여성에서 폐암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감안, 여성들의 적극적인 생활습관의 개선도 중요하다. 하루 30분씩 하는 꾸준하고 규칙적인 운동은 암만이 아닌 모든 질병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시도이다. 이와 함께 소화제 지장이 없는 한 모든 음식을 골고루 섭취해 균형 잡힌 식생활을 하는 것이 좋다. 또한 가족력이 있을 경우 없는 사람보다 2-3배 이상 발병 위험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므로 더욱 주의 깊게 관찰하고 45세 이상부터는, 특히 20년갑 이상의 흡연력이 있는 고위험군의 경우 6-12개월마다 정기검진과 저선량 CT 진단을 받는 것이 폐암 예방/조기 발견의 지름길이다. 한편 국가적으로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폐암 발생을 줄이도록 공공장소에서 금연 계몽 및 청소년층 흡연 인구의 증가를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

폐암 환자의 치료는 병기 및 환자의 상태에 따라 **항암화학요법, 방사선치료 및 수술** 등의 다각적 치료방법을 동원하여 치료를 하며, 치료방침 결정시 환자의 나이, 운동수행능력 및 체중감소의 유무 등 전신적인 상태를 미리 정확히 파악하여 환자에게 가장 독성이 적고 최대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치료를 선택해야 한다.

이러한 치료의 선택은 각 분야의 전문가(영상의학과, 호흡기내과, 흉부외과, 방사선종양학과, 병리과)와 전신 요법(항암제, 표적치료제 등) 및 각종 지지요법을 주로 담당하는 혈액종양내과 등 여러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 서로의 긴밀한 다학제간 협진으로 결정되는 것이 최근 암치료의 추세라고 하겠다.

-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박근철 교수의 글에서 발췌하여 변형함-

하도급 분쟁 해법

【선급금 이후 하도대 직불의무 범위】

발주자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직불의무는 지급된 선급금으로 기성 공사대금을 충당 후 남은 공사대금의 범위 내에서만 존재한다.

통상 공사계약에 있어서 발주자는 원사업자에 대해 선급금을 지급하고 기성 공사대금에서 선급금을 공제해 나가지만 하도급대금의 직불 규정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업체에게 직접 지급한 하도급 공사대금 또한 기성 공사대금에서 공제되는지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건설공사에 있어서 '선급금'은 공사대금의 일부로서 사전에 미리 지급을 해 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은 확립된 대법원 판결례다. 따라서, 선급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공사계약이 중간에 해지돼 중도 타절된 경우에는 타절 시점에 원사업자가 아직 공제하지 못한 선급금은 미지급 공사대금에서 공제된다.

만일, 기성 공사대금채권이 가압류나 압류가 된 뒤에 공사계약이 해지돼 선급금 반환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도 가압류나 압류 전에 선급금을 지급했다면 가압류나 압류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상계의 의사표시가 없이도 그때까지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에 당연히 충당되고 가압류나 압류의 효력도 당연히 충당돼 남은 공사대금에만 미치게 된다(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4다223636 판결).

하도급대금의 직불청구가 있는 경우에 하도급업체는 실질적으로 원사업자의 이행보조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하도급업체가 시공한 부분은 원사업자의 기성공사 부분에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선급금을 지급한 후 공사계약이 해지가 되는 경우 하도급업체의 기성 공사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이 포함된 기성고를 선급금에서 공제해야 하고 그래도 남은 공사대금이 있는 경우에 한해 하도급대금을 하도급업체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

즉, 하도급대금 직불의무는 선급금으로 기성고에 대한 공사대금을 충당하고도 남은 공사대금이 있는 범위 내에서만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다40109 판결).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 - 박영만 변호사의 하도급 분쟁 해법



○ 부산 전문건설업체 등록현황

2020. 10. 31. 기준

지 역	업체수	등록수
중 구	32	68
동 구	57	111
서 구	27	32
사 하 구	78	110
영 도 구	25	40
동 래 구	186	241
남 구	100	142
금 정 구	241	361

지 역	업체수	등록수
연 제 구	147	226
해운대구	244	344
수 영 구	111	172
부산진구	177	242
북 구	93	119
사 상 구	134	173
강 서 구	228	317
기 장 군	217	329
합 계	2,097	3,027

○ 부산 전문건설업체 변경 현황

2020. 07. 01. ~ 2020. 10. 31.

상호 변경

변경 전	변경 후
(주)에이치엔와이	(주)대산엔지니어링
해암건설(주)	(주)대아건설산업
(주)신천토건	(주)보문토건
(주)진평건설	(주)석산건설
(주)에스아이건축디자인	(주)세진건설산업

상 호	변경 전	변경 후
(주)서진산업건설	장봉식	이은남
(주)석산건설	하진근	김신구
설송건설(주)	예지성	하수정
(주)성림석재	곽대원	고광은
(주)세진건설산업	손영희	배성만
(주)썬앤케이건설	이제현	강채규
아베스토건(주)	서종철	서채원
(주)에멕	김정환, 신상호	김정환
(주)우리하이사시	김경선	정선광
(주)유한건설	류연경	류동훈
이지기술(유)	용명중	최원영
(주)준디자인	이윤현	김민석
중아건설(주)	권혁음	이현숙
(주)천우엔지니어링	이은아	황지원
초심건설(주)	박현중, 박용제	박현중
(주)태진토건	정진오	정수진
(주)포이든	김승철	박인아
(주)해금인테리어	이영호	김종만
휘람건설(주)	주무은	주무은, 이상준

대표자 변경

상 호	변경 전	변경 후
거림건설(주)	황해영	김형욱
(주)네오그린	임하수	임하수, 김주운
(주)늘푸른	김남혁	김규리
(주)능인건설	정대주	강창석
대륜건설(주)	장재석	김동한
(주)대산엔지니어링	한종수	손정아
(주)대아건설산업	이홍진	석언홍
(주)도방건설	박성주	권민경
(주)두산조경개발	이외천	김미경
(유)새천년건설	최재환	신주희

회원사 현황

○ 부산 전출·입 전문건설업체 현황

2020. 07. 01. ~ 2020. 10. 31.

지역	업체
전출 업체 현황	(주)광우토건 (대표자 : 김기용, 전남)
	(주)금정산업 (대표자 : 김금순, 충남)
	(주)더난건설 (대표자 : 홍봉준, 제주)
	(주)더휴 (대표자 : 최은아, 경기)
	(주)두인이엔지 (대표자 : 강명철, 박용범, 서울)
	(주)디자인본 (대표자 : 주미숙, 경남)
	(주)미산조경건설 (대표자 : 최진희, 경남)
	백상건설 (대표자 : 백상화, 경기)
	(주)부경개발 (대표자 : 이종석, 경남)
	(주)비소실내건축디자인 (대표자 : 송지훈, 서울)
	(주)우신비엠텍 (대표자 : 문영희, 대전)
	이케이리플래시건설(주) (대표자 : 이창식, 경남)
	(주)자유건설 (대표자 : 하광언, 경남)
	천지토건(주) (대표자 : 이미경, 경기)
	(주)청민이앤씨 (대표자 : 이수빈, 경남)
	캡틴디앤씨(주) (대표자 : 김혜경, 서울)
	(주)태민이앤씨 (대표자 : 김영태, 인천)
	하나석재(주) (대표자 : 김재용, 대전)

지역	업체
전입 업체 현황	삼일건설(주) (대표자 : 김진숙, 인천)
	(주)성림석재 (대표자 : 고광은, 경남)
	(주)에스알이테크 (대표자 : 김종봉, 서울)
	에스앤씨이엔지(주) (대표자 : 최봉균, 경남)
	용화개발(주) (대표자 : 박재선, 충북)
	(주)월드디자인건축 (대표자 : 김경희, 경남)
	(주)진양건설산업 (대표자 : 이다혜, 경남)
	태산종합조경(주) (대표자 : 이순길, 경기)
	한이븐(주) (대표자 : 김승희, 경남)

○ 부산시회 신규회원 현황

2020. 07. 01. ~ 2020. 10. 31.

 <p>거영개발(주) 부산광역시 동래구 총렬대로 410번길 25, 3층 (안락동) T: 051-532-8777 보유업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p> <p>이상문</p>	 <p>(주)까미노 부산광역시 동래구 아시아드대로 164번길 8, 2층 (사직동) T: 051-517-7745 보유업종: 실내건축공사업</p> <p>임덕연</p>	 <p>(주)더블유엠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로 251, 3층 (명륜동) T: 051-715-7262 보유업종: 실내건축공사업</p> <p>유정임</p>
 <p>명륜씨앤디(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순환로 473, 230호 (중동, 로데오아울렛) T: 051-552-9746 보유업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p> <p>유수미</p>	 <p>(주)바라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285번길 94, 402호 (화명동, 엘가) T: 051-361-3192 보유업종: 실내건축공사업</p> <p>윤한결</p>	 <p>(주)바른건설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동로 8, 1층 (부곡동) T: 051-515-0477 보유업종: 도장공사업</p> <p>김대혁</p>
 <p>비에스오션(주)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로52번길 38 (장전동) T: 051-582-8387 보유업종: 수중공사업</p> <p>구재현</p>	 <p>새담건설(주)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신번영로 365, 상가145동 301호 (하단동, 가락타운1단지) T: 051-203-2548 보유업종: 철근-콘크리트공사업</p> <p>최진만</p>	 <p>(주)세한엘리베이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과정로 74, 상가동 201호 (연산동) T: 051-701-1642 보유업종: 승강기설치공사업</p> <p>심영제</p>




(주)수테크
 부산광역시 금정구 체육공원로
 651-9, 3호 (두구동)
T: 051-582-8858
 보유업종: **실내건축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
온실공사업

권민수



신한엘리베이터(주)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하로141번길
 89-2, 201호 (괴정동)
T: 051-747-0306
 보유업종: **승강기설치공사업**

전진백



아인원건설(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970
 번가길 16, 1층 (양정동)
T: 051-816-9615
 보유업종: **실내건축공사업**

윤병섭



(주)에스씨엔지니어링
 부산광역시 동구 망양로852번길
 32 (좌천동)
T: 051-636-0482
 보유업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심상운



(주)온우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93, 2014호
 (양정동, 시청역롯데골드루즈)
T: 051-808-2776
 보유업종: **실내건축공사업**

변희돈




(주)용성건설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2007
 번길 25 (남산동)
T: 051-516-4701
 보유업종: **습식·방수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김용철



(주)재경개발
 부산광역시 동래구 미남로 134,
 2층 203호 (온천동, 더리체)
T: 051-505-8989
 보유업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이찬영



(주)주원건축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덕길2번길
 13-3 (대저1동)
T: 051-831-7689
 보유업종: **금속구조물·창호·**
온실공사업

박선애



(주)천지
 부산광역시 중구 대청로126번길
 24 (동광동2가)
T: 051-312-8302
 보유업종: **실내건축공사업**

이동섭



(주)케이엠디자인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로 15, 상가동
 106호(우암동, 일산보라아파트)
T: 051-638-1269
 보유업종: **실내건축공사업**

임경민

○ 회원 동정

무성토건(주) 대표이사 김종한(부산시회 제12대 대표회원)
사무실 이전

일자 : 2020년 10월 12일(월)

주소 : 경기도 평택시 서정역로58번길 14, 212호
 (서정동, 서정역꿈의도시두드림)

(주)국토건영 대표이사 차수열(부산시회 제12대 대표회원)
사무실 이전

일자 : 2020년 10월 23일(금)

주소 :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42, 5층(초량동)

(주)동명종합건축 대표이사 강태환(부산시회 제12대 대표회원)
사무실 이전

일자 : 2020년 10월 27일(화)

주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송로513번길 66-47, 303호
 (석대동, 테크노타워)

(주)그린아이디 대표이사 전삼록(부산시회 제12대 대표회원)
사무실 이전

일자 : 2020년 10월 15일(목)

주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국제3로 97,
 105동 2012호(명지동)

※ 회원사 동정란 게재 문의 부산시회 기획관리부 ☎051-633-0260

산재사망사고 절반으로 줄입니다!

출처 안전보건공단

철근콘크리트 공사(무너짐)

사망재해는
이렇게
발생합니다.

철근콘크리트 작업 중 거푸집동바리 무너짐에 의한 사망재해는

❶ 거푸집동바리 구조검토 미실시, ❷ 2단 이상 구조로 조립, ❸ 콘크리트 타설방법 불량으로 인해 주로 발생합니다.

재해 상황도



사망재해
예방 대책

- 거푸집동바리 작업 시 구조검토를 실시하고 조립도를 작성한 후 그에 따라 조립
- 2단 이상 구조(서포트+각재+서포트 등)의 거푸집동바리는 설치 금지
- 콘크리트 타설 중 슬래브가 무너질 위험이 있으므로, 골고루 분산타설 하여야 하며, 하부에 감시자를 두어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타설을 중지하고 보강조치 실시

관련법령

신안법,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KOSHA Guide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정의) ~ 제644조(보호구의 지급 등)
- KOSHA-Guide-H-80-2017(밀폐공간 작업프로그램 시행 및 건강장해 예방 기술지침)

산소결핍장소 작업도 안전지대가 필요합니다!
추락 등 2차 재해 예방 | 신속한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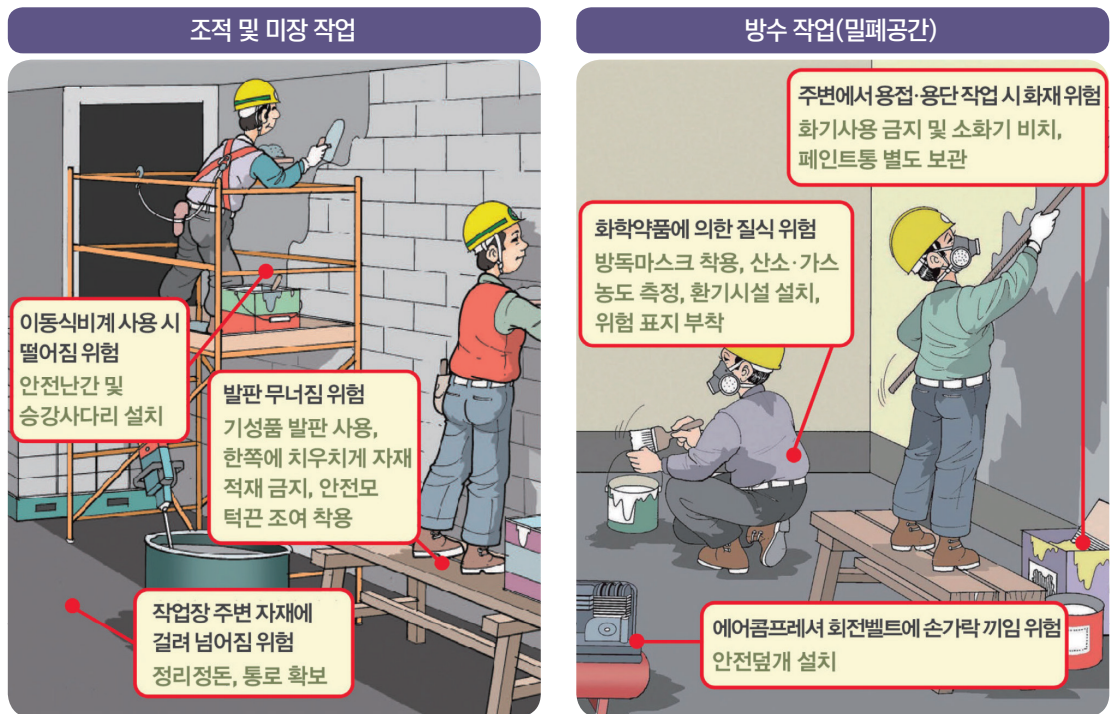


조적, 미장, 방수공사(떨어짐, 산소결핍)

사망재해는
이렇게
발생합니다.

조적, 미장, 방수작업 중 떨어짐, 질식(산소결핍)에 의한 사망재해는
① 작업발판 설치불량, ② 정리 정돈 불량, ③ 밀폐공간 작업 전 중 계속 환기 미실시로 인해 주로 발생합니다.

재해 상황도



사망재해
예방 대책

- 미장 및 조적작업을 위한 작업 발판은 튼튼하게 설치하고 이동식 비계 및 말비계 설치 시 작업발판 폭은 40cm 이상으로 확보
- 작업장 정리정돈 철저
- 밀폐공간에서 방수작업 시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고 유해가스 농도를 수시로 체크하여 산소결핍 및 화재폭발 재해 예방

안전보건공단은 질식재해예방 장비를 무료로 대여해 드리고 있습니다.

- 대여장비 :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측정기, 환기팬, 송기마스크, 공기호흡기, 구조용삼각대 등
- 대여문의 : 안전보건공단 6개 지역본부 및 21개 지사 (대표전화 : 1644-4544)

소통하는 문화공간 Healing Movie



오버 더 문

개봉 2020.10.23. | 감독 글렌 킨

출연 캐시 앵(페이 페이 목소리), 존 조(아빠 목소리), 산드라 오(종 부인 목소리)

꿈과 사랑을 찾아주는 따뜻한 모험

순수한 동심의 세계로 돌아갈 수 있는 따뜻한 뮤지컬 애니메이션으로 뽀뽀하고 호기심이 넘치는 소녀 페이 페이의 모험을 담고 있다. 병으로 일찍 엄마를 잃은 페이 페이는 엄마가 들려줬던 전설 속 달의 여신 향아 이야기를 늘 마음에 품고 살아간다. 그러던 어느 날 향아 전설이 지어낸 이야기일 뿐이라는 고모의 말에 울컥한 페이 페이는 향아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달에 갈 수 있는 로켓을 만들기 결심한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끝내 로켓 만들기에 성공한 페이 페이는 모험을 떠나게 되며 신기한 생명체로 가득한 기묘한 세계를 발견하게 된다. 영화 속의 음악은 힐링을 선사하며 화려한 시각 효과는 이야기에 더욱 빠져들게 만든다.



종이꽃

개봉 2020.10.22. | 감독 고훈

출연 안성기(윤성길), 유진(고은숙), 김혜성(윤지혁), 장재희(강노을)

상처받은 세상에서 서로의 희망이 되어준다

평생 종이꽃을 접으며 죽은 이들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운 장의사 성길(안성기). 그는 죽음 앞에서는 모든 이가 평등하다는 신념으로 오랜 시간동안 변함 없이 본인의 일을 해왔다. 동네에서 장의사로 활동했던 성길은 사고로 거동이 불편해져 삶에 대한 의지를 잃어버린 아들 지혁(김혜성)과 녹록치 않은 형편 때문에 대형 상조회사에서 새롭게 일을 시작하게 된다. 그러던 중 앞집으로 이사 온 모녀 은숙과 노을을 만나게 되고, 성길과 지혁은 잊고 있던 희망을 다시 품게 된다. 각자의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아픔을 함께 보듬으며 서로의 희망이 되어준다는 따뜻한 이야기로 죽음과 관련된 무거운 이야기를 섬세하면서도 따뜻하게 풀어냈다.

Best Seller BOOK

하루하루를 첫바퀴처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잠시나마 쉬어갈 수 있는 영혼의 안식처이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틈틈이 읽을 만한 베스트셀러를 소개한다.

글 정해린



이미예 | 팩토리나인 | 13,800원

달려구트 꿈 백화점

잠에 들어야만 입장할 수 있는 독특한 마을이 있다. 이 마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장소는 온갖 꿈을 한데 모아 판매하는 ‘달려구트의 꿈 백화점’이다. 꿈을 만드는 사람과 파는 사람, 사는 사람의 에피소드를 담고 있는 판타지 소설로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 1위를 3주간 기록했다.



베르나르 베르베르 | 열린책들 | 12,800원

심판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신작 희곡으로 죽고 난 다음에 시작되는 특별한 심판을 그렸다. 천국의 법정을 배경으로 판사와 검사, 변호사와 피고인이 펼쳐는 설전이 유쾌하게 펼쳐진다. 작품의 원제는 2015년 프랑스에서 출간된 <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Bienvenue au paradis)>이다.



류시화 | 수오서재 | 13,000원

마음챙김의 시

류시화 시인이 15년 만에 선보이는 시집으로 기원전 1세기의 랍비와 수피의 시인뿐 아니라 비스와바 쉼보르스카 같은 노벨 문학상 수상 시인, SNS에서 활동하는 신세대 시인들까지 다양한 시인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주옥같은 시들은 가슴을 울리는 감동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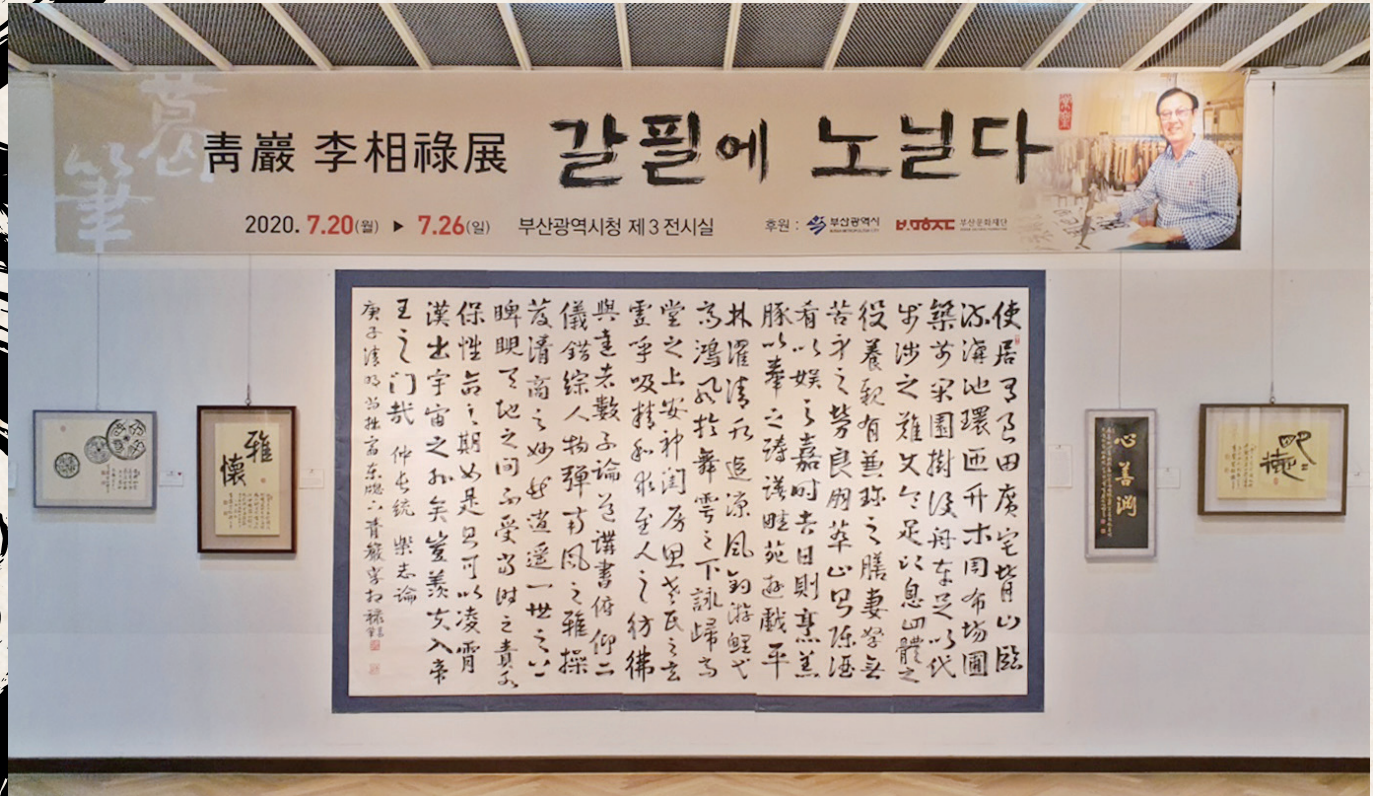


윤재수 | 길벗 | 18,000원

주식투자 무작정 따라하기

안전하면서도 확실하게 수익을 내는 주식투자의 기본 원칙들을 충실히 담고 있는 이 책은 전국의 주식 초보들에게 최고의 주식투자 입문서라는 호평을 받았다. 왕초보는 물론 심화 과정을 원하는 투자자를 위해 주식시장의 변화 속에서 경제의 흐름을 읽는 법까지 알려준다.

※ 베스트셀러 순위는 반디앤루니스의 2020년 10월 둘째 주 판매량과 주문 수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강함 속의 부드러움,

갈필 서예

청암 이상록展 '갈필에 노닐다'

부산사회 제9대 운영위원을 역임한 이상록 사장님께서 2020년 7월 20일부터 26일까지 부산시청(제3전시실)에서 개인 서예전「청암 이상록展 - 갈필에 노닐다」을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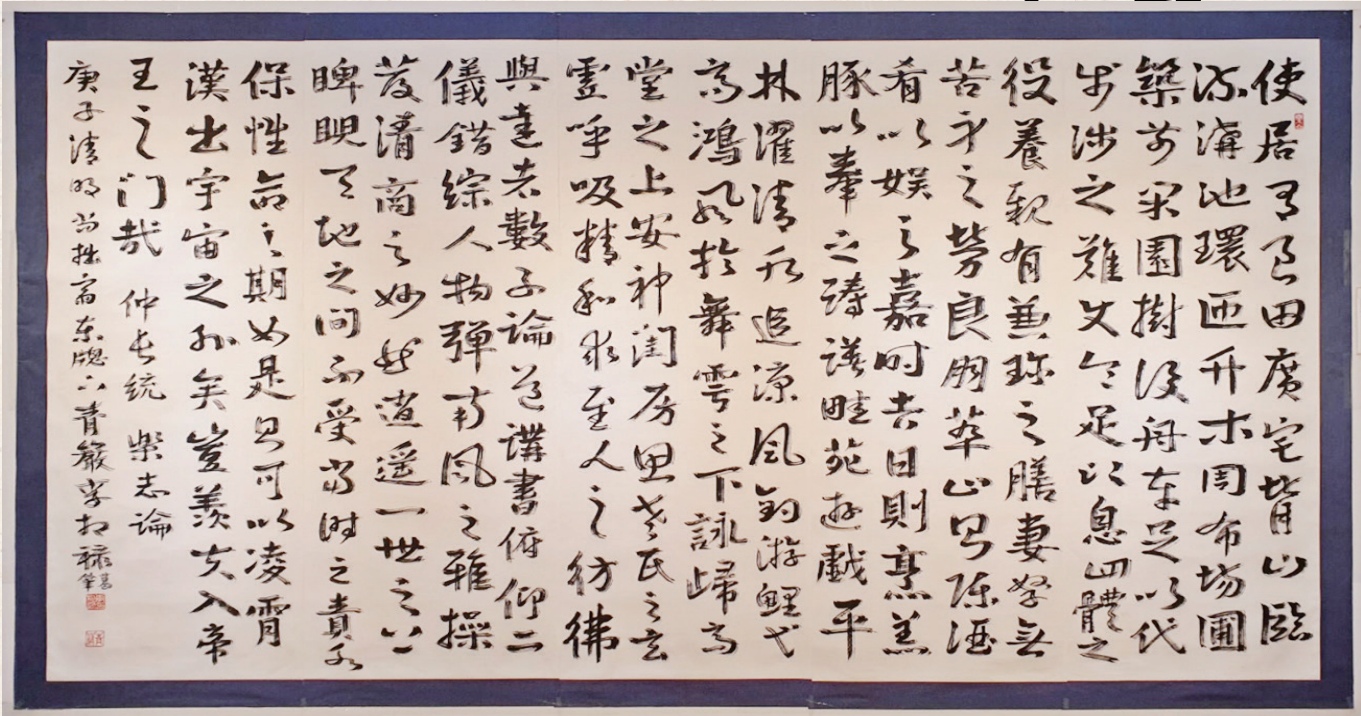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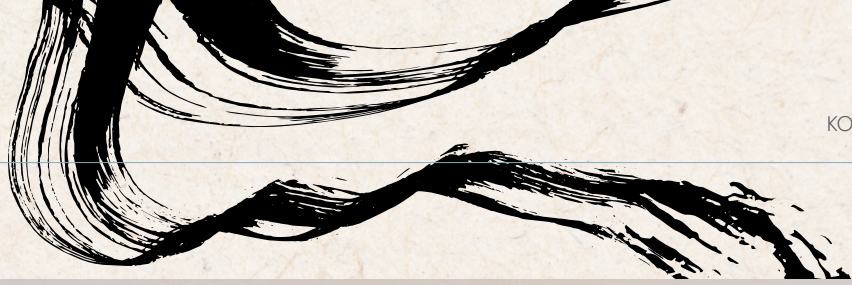
전시한 많은 작품들 중 우리협회에 기증한 '낙지론'을 소개하고자 한다.

작가 소개

청암 이상록

- 전국 서도민전 초대작가, 감사 및 심사역임
- 대한민국 미술대전 서예부문 입선
- 사)한국서화협회 우수, 특별상 초대작가
- 전국 관설당 서예대전 초대작가
- 전국 청남 휘호대전 초대작가
- 2007년 대한민국 서화예술 비엔날레 대회장상
- 제27회 국제창작 초대전 특별상
- 현, 부산취묵회 회장
 - 사)대한민국 서화디자인협회 부이사장
 - 사)한국서도예술 협회, 부산 미술협회, 청남전국 휘호대전, 관설당 서예대전 회원
- 전,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제8~9대 대표회원 역임 (주)거촌건설 대표이사 역임





樂志論 (낙지론)

원문

使居有良田廣宅이 背山臨流하여 溝池環匝하고 竹木周布하여
 사거유량전광택 배산임류 구지환잡 죽목주포
 場圃築前하고 果園樹後라.
 장포축전 과원수후
 舟車足以代步涉之難하고 使令足以息四體之役이라.
 주차족이대보섭지난 사령족이식사제지역
 養親有兼珍之善하고 妻無苦身之勞라.
 양친유겸진지선 처노무고신지노
 良朋萃止則陳酒肴以娛之하며 嘉時吉日則烹羔豚以奉之라.
 양봉취지즉진주효이오지 가시길일즉평고돈이봉지
 躊躇畦苑하며 遊戲平林하고 濯清水하며 追涼風하고 釣游鯉하며
 주저휴원 유희평림 탁청수 추량풍 조유리
 弋高鴻하고 風於舞雩之下하며 詠歸高堂之上이라.
 익고홍 풍어무우지하 영귀고당지상
 安神闔房하여 思老氏之玄虛하고 呼吸精和하여 求至人之彷彿이라.
 안신규방 사노씨지현허 호흡정화 구지인지방불
 與達者數子로 論道講書하여 俯仰二儀하고 錯綜人物하여
 어달자수자 논도강서 부앙이의 착종인물
 彈南風之雅操하고 發清商之妙曲이라.
 탄남풍지아조 발청상지묘곡
 逍遙一之上하고 睥睨天地之間하여 不受當時之責하고
 소요일세지상 비에천지기간 불수당시지책
 永保性命之期라. 如是則可以凌霄漢하여 出宇宙之外矣라.
 영보성명지기 여시즉가이능소한 출우주지외의
 豈羨夫入帝王之門哉아? (仲長統 樂志論)
 개신부입제왕지문재 중장통 낙지론

해석

거처하는 곳에 좋은 논밭과 넓은 집이 있고 산을 등지고 냇물이 곁에 흐르고 도랑과 연못이 둘러 있으며 대나무와 수목이 둘러져 있고 타작마당과 채소밭이 집앞에 있고 과수원이 집 뒤에 있다.

배와 수레가 건너나 물을 건너는 어려움을 대신하여 줄 수 있고 심부름하는 아이가 육체를 부리는 일에서 쉴 수 있게 한다. 부모를 봉양함에는 진미珍味를 곁들인 음식을 드리고 아내나 아이들은 몸을 괴롭히는 수도고 없다. 좋은 벗들이 모여 머무르면 술과 안주를 차려서 즐기며, 기쁠 때나 길한 날에는 염소와 돼지를 삶아 바친다.

밭이랑이나 동산을 거닐고 평평한 숲에서 노닐며, 맑은 물에 몸을 씻고 시원한 바람을 쫓으며, 헤엄치는 잉어를 낚고 높이 나는 기러기를 주살로 잡는다.

기우제祈雨祭를 지내는 제단祭壇 아래에서 바람을 쐬며 놀다가 훌륭한 집으로 옮기리며 돌아온다.

안방에서 정신을 편안히 하고 노자老子的 현묘玄妙하고 허무한 도道를 생각하며 초화된 정기를 호흡하여 지인至人과 같아지기를 구한다. 통달한 사람 몇 명과 도道를 논하고 책을 강론講論하며 하늘과 땅을 올려다보고 내려다보며 고금古금의 인물들을 한데 종합하여 평評한다. 남풍南風의 전이한 가락을 연주하고 청상곡淸商曲의 미묘한 곡도 연주한다.

은 세상을 초월한 위에서 거닐며 놀고 하늘과 땅 사이를 걷는질하며, 당시當時의 책임을 맡지 않고 기약된 목숨을 길이 보존한다. 이렇게 하면 하늘을 넘어서 우주 밖으로 나갈 수가 있을 것이니, 어찌 제왕帝王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부러워 하겠는가?

아는 것이
힘이다!



아는 것이 힘이 되는 세상입니다.
 사소한 정보도 나중에는 유용하게 쓰인다는 사실,
 알고 계시는가요?
 한번 알아두면 두고두고 도움되는 생활 속 팁을 알려드립니다.
 꼭 기억해두시고 필요할 때 요긴하게 적용해보시기 바랍니다.

01 과일 껍질 활용법

과육만 먹을 수 있는 과일의 경우 껍질이 생기는 불편함이 있다. 음식 쓰레기통을 가득 차지했던 과일 껍질을 활용할 수 있는 팁들을 소개한다. 겨울철 자주 먹는 귤은 특히 껍질의 부피가 큰 과일이다. 귤껍질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15초 정도 돌려주면 상큼한 귤 향으로 인해 전자레인지의 냄새를 잡아준다. 바나나 껍질 안쪽의 하얀 부분은 가죽 제품의 얼룩을 제거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겨울철에 청으로도 만들어 먹는 레몬은 주방의 기름때를 청소할 때 유용하다.

02 누렇게 된 옷 하얗게 만들기

누구나 옷장 속에 누렇게 변한 하얀색 티셔츠 하나쯤은 가지고 있을 것이다. 오랜 시간 묵혀뒀던 누런 옷들은 굵은 소금을 한 큰술 정도 넣고 뜨거운 물로 삶아주면 효과가 있다. 표백제 역할을 하는 소금은 기름기를 제거해주는 역할도 동시에 한다. 또한 누런 옷을 세탁할 때 달걀 껍데기나 베이킹소다를 함께 넣어도 하얗게 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흰 와이셔츠의 목 돌려 부분과 팔목 안쪽 부분의 찌든 때를 제거할 때는 소량의 삼푸를 발라 뒀다가 세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03 다양한 소금 활용법

요리를 할 때 빠질 수 없는 재료인 소금! 심심한 맛에 생명을 불어 넣어 주는 소금은 음식을 만들 때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곳에 활용할 수 있다. 고운 입자의 소금을 적당히 넣고 녹인 따뜻한 물로 양치 후에 가글을 해주면 구강 내의 세균 번식을 막아줘 충치를 예방할 수 있다. 목감기로 인해 목이 부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소금물 가글을 해주면 뛰어난 효과를 볼 수 있다. 안 쪽까지 제대로 세척하기 어려운 보온병과 전기 주전자의 경우 굵은 소금을 녹인 소금물을 넣고 흔들어주면 미처 씻지 못해 남아 있던 잔여물과 물 때 등을 제거할 수 있으니 참고하자.

실명까지 초래할 수 있는

대표적 노인성 안질환, 황반변성

한 번 나빠지면 돌이키기 어려운 신체 기관인
눈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눈 건강을 지키려면 평소에 검진을 통해 질병을 예방하며
관련 질환에 대해서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다.
수많은 눈 관련 질환 중 황반변성은 대표적인
노인성안질환으로 여겨지며 특히 주의해야 할 질병이다.
황반변성이란 무엇이며 증상과 원인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글 정해린



황반변성은 망막의 중심부에 위치한 황반부에 문제가 생겨 시력이 나빠지는 질환이다. 망막은 안구의 가장 안쪽을 덮고 있는 투명한 신경조직이며, 황반은 망막 중에서도 시력의 9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부분이다. 황반에는 시세포가 밀집돼 있어 빛을 가장 정확하고 선명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안구 내로 들어온 빛은 망막의 시세포를 통해 시신경을 지나 뇌로 전달되며 이 과정을 통해 사람들은 사물을 볼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황반의 구조 및 기능에 손상이 생겨 시력이 감소되거나 심할 경우 상실되는 질환을 황반변성이라고 한다. 황반변성의 원인에는 노화부터 근시와 염증질환, 외상, 흡연 등 여러 가지가 있으며 유전적 원인도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노화로 인한 경우를 '노인성 황반변성'이라고 하며 60대 이상 연령대의 사람들에게서 많이 나타난다. 하지만 나이가 든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젊은 황반변성 환자들도 증가하고 있다.

대표적인 증상은 글자나 직선 또는 물체가 휘거나 일그러져 보이는 것이며 특정 부분이 지워진 것처럼 검게 보일 수도 있다. 색의 명암을 구별하는 능력이 떨어지기도 하며 책을 읽을 때에는 글자 중간에

공백이 생기기도 한다. 황반변성을 자가진단 해보는 방법에는 암슬러 격자 테스트가 있다. 바둑판 무늬의 격자 그림 중간에 점이 찍혀 있는 테스트 이미지를 한 쪽 눈을 가린 채 응시한다. 이 때 선이 찌그러져 보이거나 중간에 점이 잘 보이지 않는 등의 증상이 있으면 황반변성을 의심할 수 있다. 이 경우 안과를 방문해 정밀 검사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황반변성은 조기 진단과 꾸준한 치료가 필요하다. 약물 투여나 수술 등 다양한 방법으로 치료가 진행되며, 일찍 발견할수록 망막세포 손상이 적어 치료 효과도 더 높아진다. 이미 망막 신경의 손상이 많이 진행된 경우에는 시력이 좋아지는 것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황반변성이 아니라 하더라도 망막 건강을 위해서는 평소에 항산화 비타민과 루테인, 오메가-3 등이 풍부한 과일, 녹황색 채소와 등푸른 생선 등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좋다. 특이한 증상이 없더라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정기적으로 안과를 방문해 시력 및 안저검사를 받는 것이 황반변성을 비롯해 여러 질환들을 초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평소에 눈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미리 질병을 예방하도록 하자.

가장 부산스러운 시장

부평강통시장

부산 중구의 지명인 '부평'은 부산의 옛 지명인 부산(富山)의 '부(富)'자와
보수천 하구의 갈대밭과 풀밭을 의미하는 '평평할 평(平)'자가 합쳐진 말이다.

부평동이 하구에 위치해 있어 과거에는 갈대밭과 풀밭이 많았던 탓이다.

부평시장의 또 다른 이름인 부평강통시장에도 유래가 있다.

한국 전쟁 당시 미군 부대에서 나온 물자인 통조림 류의 강통 제품이 많이 판매됐기 때문이다.

글 정해린 사진제공 부평강통시장 홈페이지



즐길거리와 먹을거리 가득한 부평강통시장

채소와 육류부터 수산물과 곡류, 가공식품과 의류, 잡화 등 여러 가지를 판매하고 있는 부평강통시장은 품목에 따라 패션거리와 먹자거리, 강통야시장거리 등으로 나누어진다. 중간 통로 양쪽으로 상점들이 늘어서 있는 아케이드 형태이기 때문에 편하게 관광과 쇼핑을 즐길 수 있다. 부평강통시장에서 빠질 수 없는 것 중 하나는 먹거리다. 그 중에서도 비빔당면과 유부주머니는 부평강통시장하면 떠오르는 특색 있는 음식이다. 시장 상인들이 간단하게 허기를 메우기 위해 만들었다는 비빔당면은 삶은 당면에 잘게 썬 어묵과 단무지 등을 넣고 양념을 얹어낸 음식이다. 별 것 없는 재료로 만든 간단한 음식이지만 부산을 찾는 이들이 꼭 먹어보고 싶어 하는 것 중 하나다. 당면으로 속을 채운 유부를 따끈한 국물과 함께 먹는 유부주머니와 부산을 대표하는 음식인 어묵 또한 부평강통시장에서 시작된 먹거리들이다.

국내 최초 야시장으로 이름을 떨치다

2013년 10월부터는 국내에서 최초로 선보인 야시장 덕분에 부평강통시장이 다시 유명세를 떨쳤다. 다양한 먹거리가 가득한 부평강통야시장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열리며 연중무휴로 운영된다. 원래 시장 내의 먹자골목에서는 부산의 향토 음식들을 맛볼 수 있다면 야시장에서는 젊은 세대를 공략한 퓨전 먹거리가 풍성하다. 꼬치류와 큐브 스테이크 등 시장을 둘러보며 가볍게 먹을 수 있는 즉석 먹거리부터 태국과 인도네시아, 중국 등 세계의 전통음식들도 맛볼 수 있다. 밤거리를 환하게 밝히는 경관조명도 설치되어 있어 한층 더 활력이 있는 야시장은 부산을 찾은 관광객들과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한다. 부산의 옛 이야기와 새로운 문화가 공존하는 부평강통시장은 전통과 현대가 모두 살아 움직이는 곳이다.

▶▶▶ 스코틀랜드를 상징하는 고대의 요새 ◀◀◀

에든버러 성 (Edinburgh Castle)

글 정해린

스코틀랜드의 수도인 에든버러는 중세 도시의 외관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구시가지와 18세기에 조성된 신시가지가 공존하고 있는 도시다. 현대적인 풍경에 전통이 살아 있는 옛 건축물까지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어 상반되는 매력을 느낄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있는 에든버러 성은 스코틀랜드와 에든버러 시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다.

가파른 바위 절벽 위에 세워져 있는 에든버러 성은 7세기에 군사적 목적인 요새로 만들어진 건축물이다.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는 국경을 접하고 있어 영토를 둘러싼 싸움이 잦았는데 에든버러 성 또한 수없이 많은 전쟁의 배경이 된 곳이다. 전쟁의 결과에 따라 성의 주인은 여러 번 바뀌었으며 뺏고 뺏기는 역사가 반복됐다.

웅장한 규모의 에든버러 성은 12세기에서 16세기 사이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세인트 마거릿 예배당과 그레이트 홀, 크라운 룸 등으로 구성돼 있다. 세인트 마거릿 예배당은 성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이며 그레이트 홀은 스코틀랜드 의회의 모임 장소로 사용됐던 곳이다. 오늘날에 성에 남아 있는 건물의 많은 부분은 18세기와 그 이후에 지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성 앞의 넓은 광장과 입구에서부터 고대 도시의 웅장함을 느낄 수 있으며, 성 내부에는 스코틀랜드 왕가의 유물들을 관람할 수 있는 로얄 펠리스와 스코틀랜드 국립 전쟁 박물관을 포함해 수많은 공간들이 있다.



건강과 재미, 두 마리 토끼 잡기

신나는 자전거 타기

자전거는 걷기나 달리기 등의 유산소 운동과 같이 심폐기능을 발달시키는 운동이다. 특히 관절이나 허리가 좋지 않은 사람이나 하체 근육이 약한 사람들에게 좋으며 발목이나 무릎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칼로리를 소모할 수 있는 효과적인 운동이기도 하다. 언택트 운동이 유행하는 요즘, 사람이 많지 않은 곳에서 자전거를 타며 힐링을 하는 건 어떨까.

글 정해린

자전거를 처음 배운다면

자전거를 배울 때는 안장에 직접 올라타기 전에 먼저 자전거를 끌고 걷기와 달리기를 해보면서 균형 감각을 익히는 것이 도움이 된다. 자전거를 오른쪽에 둔 상태에서 두 손으로 핸들을 잡고 곡선 및 지그재그로 끌기, 경사로 끌기 등 여러 형태로 해보면 좋다. 걷기와 같은 방법으로 자전거를 끌고 천천히 달리기도 해봤다면 자전거에 타보자. 탈 때는 자전거를 몸 쪽으로 기울여 높이를 낮춘 다음 다리를 올리고 안장에 앉으면 된다. 좌우로 기울이며 균형을 잡아봤다면 본격적으로 자전거를 운행할 차례다. 이 때 자전거가 가고자 하는 진행 방향을 주시하면서 페달을 연속적으로 돌리는 것이 중요하며, 방향을 바꿀 때는 가고자 하는 쪽으로 몸을 기울이면 된다. 특히 넘어질 때는 쓰러지는 쪽으로 몸과 핸들을 같이 돌려야 하는 것을 꼭 기억하자. 멈출 때는 브레이크를 잡아 속도를 서서히 줄이도록 한다.

안전하게 자전거 타는 법

자전거를 타기 전 안장을 나에게 맞는 높이로 조절하는 것은 기본적인지만 중요한 안전 수칙이다. 양쪽 발가락의 끝이 바닥에 닿아야 알맞은 안장 높이라고 할 수 있다. 안장을 조절했다면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는 것도 잊지 말자. 도로에 나갔다면 꼭 지켜야 할 안전 수칙도 있다. 자전거 2대 이상으로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지 않기, 야간 운행 시 라이트 켜기, 운행 중에 휴대폰 및 이어폰 사용하지 않기 등이다. 또한 비가 오는 날에는 자전거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평소보다 더 어려워 미끄러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빗길 운행 중에는 원래보다 속도를 더 줄이고 안전거리도 넉넉하게 유지하도록 하자.

올바른 자전거 관리 방법

타는 시간보다 보관하는 시간이 더 긴 자전거는 올바른 보관 방법을 숙지하고 있는 것도 중요하다. 집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관리에는 타이어에 공기 넣기와 체인에 오일 바르기 등이 있다. 타이어의 공기압이 낮으면 탑승자의 무게에 눌러 원활한 주행이 어렵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신경을 써줘야 한다. 공기는 자전거 전문 매장에 방문해서 넣어도 되지만 펌프를 구매해 직접 해도 무방하다. 체인에 오일을 바르는 이유는 녹을 방지하고 부식을 막기 위함이다. 오일을 바를 때는 오염된 부분을 먼저 닦아낸 다음 발라주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자전거의 부품들 중 몇 가지는 수분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장마철에는 최대한 습기가 적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



틈날때 간단하게 배우는



틈새 시간을 이용해 간단하게 익힐 수 있는 외국어 회화를 소개한다.
이번호에서는 이탈리아 사람과 만났을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인사법을 알아보자.

이탈리아어 기초 인사말

상황	인사
안녕하세요	Buon giorno 본 조르노(아침) buona sera 부오나 세라(저녁)
만나서 반갑습니다	Buona giornata 보나 죠르나따
감사합니다	Grazie 그라찌에
미안합니다	Mi Scusi 미 스푸지
좋은 하루 보내세요	Sono Coreano 소노 꼬레아노

이탈리아 사람과 만났을 때, 참고하세요!

TIP. 01

이탈리아는 국가 통일의 역사가 120여년으로 비교적 짧아 곳곳에 각 지방 고유의 특색이 남아 있다. 때문에 이탈리아인 이라고 불리는 것보다 '밀라노 사람' 이나 '피렌체 사람' 같은 호칭으로 불리는 것을 더 좋아한다. 또한 지역 사회보다는 가족 지향적인 특성이 강하기도 하다.

TIP. 03

함께 식사를 할 때 지켜야 할 매너도 있다. 소금이나 후추 같은 양념 통은 상대방에게 건네받지 않고 직접 가져가는 것이 보통이다. 다른 사람을 거쳐서 받으면 좋지 않다는 미신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식사를 마친 후 화장을 고치는 등의 개인적인 일은 식당 내 화장실에서 하도록 하자.

TIP. 02

이탈리아에서는 제스처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손가락으로 턱을 두드리는 것은 '흥미가 없다' 또는 '귀찮다' 라는 의미이며, 코를 두드리는 것은 '주의하라'는 뜻을 담고 있다. 또한 귀를 만지면 상대방을 향한 모욕의 뜻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대화를 할 때 귀를 만지지 않도록 하자.

TIP. 04

오후 시간에 낮잠을 즐기는 것을 좋아하는 이탈리아 사람들과 약속을 잡을 때는 늦은 오후보다는 이른 시간대가 좋다. 또한 대화할 때나 인사할 때는 상대방의 눈을 또렷하게 응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눈을 마주본다는 것은 '나는 당신에게 집중하고 있다'라는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다.



📖 STORY 01

난 알아요

초등학교 1학년 꼬마가 상스러운 말을 하는 것을 선생님이 들었다.

“애야, 그런 말을 하면 못써! 누가 그런 말을 하더냐?”

“우리 아빠요.”

“괜찮다. 어차피 넌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를 테니까.”

“아니에요. 전 알아요.”

“그래? 무슨 뜻인데?”

“차 시동이 안 걸린다는 뜻이에요.”



📖 STORY 02

피카소 그림

잘난 척하길 좋아하는 남자가 미술관에 갔다.

남자: 이건 마네 그림이지요?

안내인: 아닙니다, 모네 그림입니다.

남자: 이쪽은 르누아르 그림이네요?

안내인: 아니지요, 고흐 그림입니다.

남자: 이 괴상한 초상화는 분명 피카소 그림이지요?

안내인: 아뇨, 그건 거울인데요...!



상체의 긴장을 완화시켜주는 팔 근육 스트레칭

오랜 시간 동안 한 자리에 앉아 컴퓨터로 일하는 직장인들은 팔과 어깨 등의 상체에 힘이 잔뜩 들어가 굳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의식적으로 자세를 바꿔주거나 틈틈이 스트레칭을 해주지 않으면 근육통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 때문에 집중력이 흐트러지기도 한다. 간단하고 쉬우면서도 효과적으로 팔 근육을 풀어줄 수 있는 스트레칭 몇 가지를 소개한다.

✓ 팔 스트레칭1

- ❶ 의자에 앉은 채로 팔을 머리 위로 든다.
- ❷ 팔을 90도 각도로 굽힌다.
- ❸ 왼쪽 팔로 오른쪽 팔꿈치를 당겨준다.
- ❹ 오른쪽 팔도 똑같이 반복한다.



✓ 팔 스트레칭2

- ❶ 의자에 앉은 채로 팔을 어깨 높이로 든다.
- ❷ 왼쪽 팔뚝의 바깥쪽에 오른팔을 올려 X자 모양으로 만든다.
- ❸ 오른팔로 왼쪽 팔뚝을 누르면서 당겨준다.
- ❹ 반대쪽도 똑같은 방법으로 반복한다.

KOSCA 중앙회 업무단신

01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21대 국회가 본격 가동되면서 전문건설업계의 현안사항 등을 전달하기 위한 국회 입법 세일즈에 적극 나서고 있다.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등 하도급업계와 관련된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을 만나 부당특약 효력 무력화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보호를 위한 제도 도입, 분쟁조정협의회 시도 설치, 표준하도급계약서 의무화를 담은 법안 등에 찬성 입장을 밝히고 조속한 법안 통과를 요청하는 등 업계 의견과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02 김영윤 중앙회장은 7월 16일 공정거래위원회 조성욱 공정위원장, 김상수 대한건설협회장을 비롯한 10대 종합건설업체 및 협력 하도급업체 대표가 참석한 '건설업계 상생협약 선언식 및 모범사례 발표회'에 참여하여 을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와 부당특약 설정행위 근절 등 건설업계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공정한 건설환경 조성을 요청했다.

03 중앙회(회장 김영윤)와 한국BIM학회(회장 심창수)는 7월 14일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활성화를 통한 스마트 전문건설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스마트 전문건설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대정부 건의 △전문건설산업의 BIM 활용 및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BIM 온라인 교육 소개 및 홍보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업무단신

01 전문건설공제조합 제17대 대의원 185명의 임기가 9월 29일부터 시작됐다.

제17대 대의원은 지점별 선출 대의원 180명과 당연직 대의원 5명으로 구성됐으며, 지점별 선출 대의원의 임기는 2022년 9월 28일까지 2년간이다.

지점별 선출 대의원은 지점별 총 출자좌수에 비례해 정해진 선출정수에 따라, 지점별 다수출자 조합원을 우선으로 해 선출됐다. 지점별 대의원 180명 중 149명은 지난 16대에 이어 연임됐으며, 31명은 이번 17대에 새로이 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은 홈페이지를 통해 제17대 대의원 선출 확정을 공고하고 전체 185명 대의원 명부는 본부 및 각 지점에 비치하여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했다.

부산시회 2020년 4/4분기 주요일정 안내

일 자	주요일정	비 고
2020.12.2(수)	제2차 임원연석회의	
2020.12월 중	제2차 부산전문건설인 조찬세미나	
	2020년도 신규회원 간담회	

※ 상기 일정은 협회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0년 건설업 교육 일정 안내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설교육센터는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최고의 건설업 윤리 및 실무종합 교육기관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3에 근거하여 건설업을 신규로 등록한 자(건설업자가 추가로 다른 업종을 등록한 경우 제외) 및 영업정지 기간 중인 건설업자를 대상으로 「건설업 윤리 및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건설업 신규 등록업체의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 미이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에 교육이수가 의무적이며, 영업정지기간 중인 건설업체의 경우는 동 교육 이수 시 영업정지기간이 최대 15일 감경될 수 있기에 교육이수가 권장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발 맞추어 교육일정과 장소에 변동이 자주 발생되고 있으니, 교육 이수를 희망하는 업체들은 반드시 우리협회 건설교육센터 홈페이지(<http://edu.kosca.or.kr>)를 통해 최신 일정을 확인하여야 한다.

2020년도 건설업 교육 일정 안내

01 교육대상

- 의무교육대상 : 신규건설 등록업체
 - 6개월 이내 등기임원(대표자 포함) 중 1인 교육 이수
 - **벌칙 : 6개월 이내 미이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3 및 제99조
- 임의교육대상 : 영업정지 처분업체
 - 영업정지 기간 내 교육 이수
 - **감경기준 : 대표자 15일, 등기임원 1인당 5일 감경**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6

02 교육내용 및 비용

- 내용 : 건설산업관련법령(건설법·하도급법·계약법), 건설품질·환경·안전관리, 윤리경영
- 시간 : 8시간 (09:00 ~ 18:00) • 교육비용 : 150,000원

03 교육신청 및 결제방법 (인터넷·팩스·전자우편 신청)

-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신청 및 교육비 결제 (신용카드, 계좌이체)
 - 건설교육센터 <http://edu.kosca.or.kr>
- 교육 신청서 팩스 혹은 전자우편 전송 후 교육비 결제 (무통장 입금)
 - 전송방법 : 팩스 02-3284-1066
 - 전자우편 edukosca@naver.com
 - 입금계좌 : 기업은행 525-001144-04053
 - (예금주 (사)대한전문건설협회)

04 2020년 교육일정

11월	12월
10일(서울)	4일(전주)
13일(광주)	11일(천안)
20일(대구)	15일(서울)
24일(서울)	18일(창원)
27일(수원)	29일(서울)

※ 코로나19로 인해 교육 일정 및 장소가 변동될 수 있으니 우리 협회 건설교육센터 홈페이지 (<http://edu.kosca.or.kr>)에서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5 교육장소

지역	교육장소
서울	전문건설회관 (서울시 동작구 보라매로 5길 15, 2층 회의실)
부산	부산상공회의소 (부산시 부산진구 황령대로 24)
대구	대구문화방송 (대구시 수성구 동대구로 400, 7층 컨퍼런스룸)
광주	광주상공회의소 (광주시 서구 대남대로 465, 7층 대회의실)
대전	예람인재교육센터 (대전시 중구 동서대로 1304번길 33)
울산	울산가족문화센터 (울산시 남구 대공원로 84)
수원	수원상공회의소 (경기도 장안구 수성로 311, 지하1층 대회의실)
의정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 북부교육장 (경기도 의정부시 둔야로 33번길 17)
원주	강원도경제진흥원 (강원도 원주시 호저로 47, 지하1층 대강의실)
강릉	강릉과학산업진흥원 (강원도 강릉시 과학단지 106-11, 2층 중회의실)
천안	천안축구센터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축구센터로 150, 2층)
전주	전주상공회의소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흥산로 276, 7층 대강당)
순천	순천만국가정원 (전라남도 순천시 국가정원1호길 47, 국제습지센터 1층, 입체영상관)
안동	안동상공회의소 (경상북도 안동시 축제장길 240, 3층 컨퍼런스룸)
창원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226번지, 6층 소강당)
진주	경상대학교 GNU컨벤션센터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501, 4층 세미나실)
제주	제주상공회의소 (제주도 제주시 청사로1길 18-4)

코스카레터를 읽고..



코스카레터를 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나, 아쉬웠던 부분, 그리고 앞으로 새롭게 다뤘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 주세요!
독자의견은 메일(kosca21@kosca.or.kr)을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주)바른건설
김대혁 대표이사

코로나19로 인해 요즘 건강에 대한 관심도 부쩍 늘어나고 있는데, 코스카레터에서 건강 관련 칼럼이 연재되어서 유익하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생산체계가 개편되면서 전문건설업도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관련된 내용을 확인할 곳이 마땅찮은 형편입니다.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지면이 있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실생활과 건설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익한 정보 많이 게재해 주시고 더 발전하는 코스카레터가 되길 바랍니다.



(주)까미노
하영돈 차장

건설업계에 많은 변화가 오고 있는 시기인데 코스카레터에서 관련된 건설산업정보가 잘 정리 되어 쉽게 이해하고 많은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코스카레터를 잘 활용해 업무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좋은 정보 부탁드립니다. 항상 발전하는 코스카레터가 되길 바라며, 코로나19에 다들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 지난 호 독자퀴즈 정답자 발표

- (주)이제이건설 사원 **김도영**
- 평화건설(주) 과장 **하회련**

● 지난 호 독자퀴즈 정답

- 2번

소중한 독자의견을 보내주신 분께는
추첨을 통하여 **소정의 상품**
(문화상품권 등)을 드립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코스카레터 잘 읽으셨나요?

Quiz를 풀고 정답을 맞춰주세요~

Q 국토교통부에서는 현행 공공공사 3억원 이상, 민간공사 1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는 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0. 11. 27(금)부터는 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이 각각 얼마 이상으로 확대 되었을까요?

- 공공공사 : _____ 원 이상
- 민간공사 : _____ 원 이상

정답을 아시는 분은 협회 홈페이지(www.kosca21.or.kr) 팝업창을 통해
2020.12.31.(목)까지 응모하시면 추첨하여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 정답자에 한해 추첨 증명)

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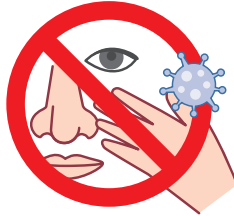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기억해야 할 근로자 수칙

근로자 예방수칙



작업 전·중·후 물과 비누로
꼼꼼히 자주 손씻기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기침할 땐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기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피하기



개인 작업복·보호구
사용으로 교차감염 예방하기



임신여성·장년근로자는
작업 중 마스크 꼭 착용하기



호흡밸브가 있는 방진마스크는

바이러스 등의 외부배출 우려가 있어 코로나19 예방용 사용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 시



마스크 착용하기



외출·작업 자제, 1~2일
경과 관찰하며 집에서 휴식하기



대형병원, 응급실 방문 자제
관할보건소, 1339, 지역번호+120
으로 먼저 상담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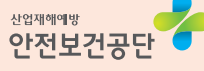
의료기관(*선별진료소) 방문 시
마스크 꼭 착용 및 자차 이용 권고
선별진료소 안내 :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확인,
관할보건소 또는 1339, 지역번호+120 문의



진료 전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
호흡기 질환자 접촉 여부 알리기



의료인과 방역당국의
권고 잘 따르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황령대로30번길 30, 4층(범천동, 전문건설회관)

Tel. 051-633-0260 Fax. 051-633-0261

www.kosca21.or.kr